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470-14



# ESTONIA, LATVIA, LITHUANIA 2012

## 발트 3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470-14



**ESTONIA, LATVIA, LITHUANIA 2012**

**발트 3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머 리 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투자유인 정책으로 인해 한-EU FTA 발효 이후 우리기업들의 투자 관심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발트3국 세제 및 세정에 대한 체계화된 자료는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에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3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발트3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해당 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 Contents

<b>제 1 부</b>	<b>발트3국 핵심 세무연구</b> .....	1
1.	발트3국 연구배경 .....	3
2.	발트3국 세무상 애로사항 및 이슈정리 .....	7
3.	발트3국 진출사례 분석 및 시사점 .....	9
4.	발트3국 조세 요약 .....	12
5.	발트3국 단일세율(Flat-tax)제도의 장점과 단점 분석 .....	15
<b>제 2 부</b>	<b>리투아니아(Republic of Lithuania)</b> .....	17
<b>제 1 장</b>	<b>리투아니아 국가개황</b> .....	18
1.	국가 개요 .....	20
2.	정치·경제 동향 .....	20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22
<b>제 2 장</b>	<b>리투아니아 조세제도</b> .....	23
1.	법인소득세 .....	24
2.	외국인 투자관련 세금 감면혜택 .....	30
3.	이전가격세제 .....	32
4.	원천징수 .....	34



5. 부가가치세 .....	35
6. 기타 주요조세 .....	37
7. 개인소득세 .....	40
<b>제 3 장 리투아니아 투자환경</b> .....	<b>45</b>
1. 6 Steps and 22Days .....	46
2. 리투아니아 투자방법(설립) .....	46
3. 경 영 .....	49
4. 지사 및 연락사무소 .....	50
5. 합병 및 분할(국제합병) .....	51
6. 주식공개 및 기타 .....	53
<b>제 3 부 라트비아(Republic of Latvia)</b> .....	<b>55</b>
<b>제 1 장 라트비아 국가개황</b> .....	<b>57</b>
1. 국가 개요 .....	58
2. 정치·경제 동향 .....	58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59
<b>제 2 장 라트비아 조세제도</b> .....	<b>60</b>
1. 법인소득세 .....	61
2. 특별경제구역 세금혜택 .....	67
3. 이전가격세제 .....	68
4. 원천징수 .....	69
5. 부가가치세 .....	70

6. 기타 주요조세 .....	73
7. 개인소득세 .....	76
<b>제 3 장 라트비아 투자환경 .....</b>	<b>81</b>
1. 정부지원제도(State Support programs) .....	82
2. 라트비아 투자방법 .....	83
3. 지사 및 연락사무소 .....	86
4. 합병 및 분할(국제합병) .....	86
5. 주식공개 및 기타 .....	88
<b>제 4 부 에스토니아(Republic of Estonia) .....</b>	<b>89</b>
<b>제 1 장 에스토니아 국가개황 .....</b>	<b>91</b>
1. 국가 개요 .....	92
2. 정치·경제 동향 .....	92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93
<b>제 2 장 에스토니아 조세제도 .....</b>	<b>94</b>
1. 법인소득세 .....	95
2. 이전가격세제 .....	97
3. 원천징수 .....	98
4. 부가가치세 .....	99
5. 기타 주요조세 .....	103
6. 개인소득세 .....	106





제 3 장	에스토니아 투자환경	111
1.	WHY ESTONIA?	112
2.	에스토니아 투자방법(설립)	115
3.	지사 및 연락사무소	119
4.	합병 및 분할(국제합병)	120
5.	주식공개 및 기타	121
참고문헌(1)		125
참고문헌(2)		126



# 제1부 발트3국 핵심 세무연구



# 1

## 발트3국 연구배경

### □ 발트3국(Baltic states)의 기본적인 이해

- 발트해 동쪽의 세나라(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의미
- '91년 소련이 해체될 때 까지 소련의 점령하에 있었으며 독립이후 친서방 정책으로 시장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
- 주로 역사적, 지리적인 기준의 분류로 각 국의 언어, 인구구성, 종교 등 각기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으나, 유럽의 물류중심지로서 집중 조명되고 있음
- 진출기업의 투자와 조세제도 또한 각기 개별적으로 입안, 집행되고 있어 발트3국 각각의 제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의 주요 진출예상국 발트3국!

- 유로존 경제위기로 유럽의 경제성장이 주춤하나 소비시장으로서의 유럽의 입지는 변함이 없음
- 기존의 북미, 중국, 동남아 등의 지역적으로 편협한 해외진출 패러다임은 IT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전략
  - 우리기업들은 브라질, 남아공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앞 다투어 모색 중
-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진출이 이루어 지지 않은 1)CIS국가와 북, 동유럽 시장, 그리고 중산층이 밀집한 서부러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은 글로벌 완전 경쟁구도의 필수적인 진출요충지로서 발트3국은 매력적인 투자처
  - 발트3국 해외세정연구로 해당지역의 진출을 모색중인 글로벌기업 및 중소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자료가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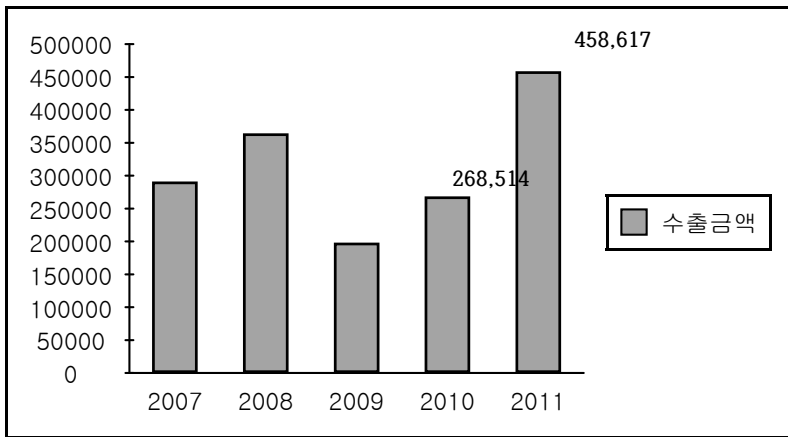
1) CIS : 독립국가연합

- 기존 투자진출국에 대한 이미 진출한 후의 연구 안내보다 본격적인 진출이 예상되는 주요 미연구 국가에 대한 안내가 더욱 시의적절함

□ 지속적인 판로확대, 대 발트 수출증

◎ 발트3국으로의 수출현황 ◎

(천불)



【출처 : 한국무역협회】

- '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한때 주춤하였으나, 그 이후 급격한 수출증가

'10년 대비 '11년 수출증가율 231.5%

☞ 소비재생산 기업의 본격적 진출타당성 검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한-발트3국 친밀한 외교관계 ⇒ 해외진출의 도화선

- '11년은 우리나라와 발트3국의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해로 양국간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고위급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양국간 투자확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약속함
- '12.6월 우리나라 국세청장이 참석한 제19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 회의에도 발트3국의 국세청장이 참관하여 우리나라 세정에도 관심을 표명함

- 이외에도 발트3국 투자기업청의 한국기업을 위한 투자진출 설명회가 열리는 한편, '11년 6월 라트비아 총리가 내방하여 우리나라 기업을 방문하는 등 양국간의 협력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양국간 최근 교류(민간 설명회 포함) 일지

일 자	내 용
'08. 11월	발트3국 투자진출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 발트3국 투자개발청 내한 투자유치
'10년	제1차 한-라트비아 정책협의회(서울) ☞ 정례회의 개최(MOU)
'10. 01월	에스토니아 외교장관 방한
'11. 05월	에스토니아 물류업계 대표단 방한 세미나개최 ☞ 물류업체 교류협의
'11. 05월	한국 통상사절단 발트3국 방문 ☞ 물류업체 교류협의
'11. 06월	라트비아총리 내한 ☞ 국내 전자업체 등 방문
'11. 07월	박희태 국회의장 발트3국 방문 ☞ 대사관설치, 한국기업 적극투자요청
'11. 10월	한-라트 수교20주년 경제협력세미나(라트비아) ☞ 양국간 경제협력방안 논의
'11. 11월	이명박 대통령- 발트3국 대통령 서신교환 ☞ 양국간 관계활성화 및 경제협력 약속
'11. 11월	에스토니아 국회외교위원장 방한
'12. 03월	에스토니아 디자인 및 서비스업계 세미나(부산)
'12. 06월	리투아니아 여수 세계박람회 참가

- '11년 수교 2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간 대사관설치 및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발트3국의 주요기관에서 한국기업의 발트3국 진출을 적극 유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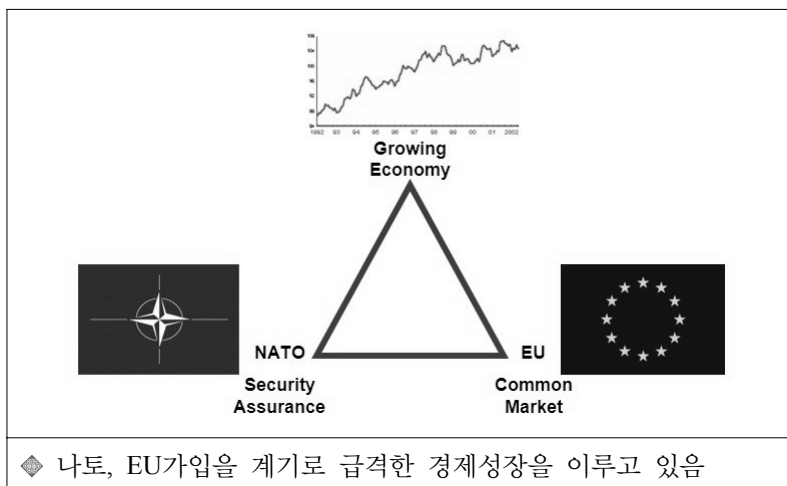
□ 작지만 큰나라(7억명의 무한한 시장)

- EU로 통합된 거대시장
- 발트해의 항구시스템, 러시아-동유럽-CIS국가를 잇는 도로, 철도망



【출처 : 리투아니아 투자청】

□ 안보와 경제협력으로 안정적인 외국인투자기반조성



【출처 : 라트비아 투자청】

## 2

## 발트3국 세무상 애로사항 및 이슈정리

### □ 세무상 애로사항 및 시사점

- 발트3국은 적극적인 외국기업유치로 고세율에 대한 애로사항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현지 진출에 대한 유인책이 비슷하여 각 국의 세무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실제 각 국의 경제 정책에 따라 3국이 모두 다른 세금정책을 취하고 있음
  - ☞ 각국 개별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기업의 설립 및 초기운영은 빠른 편이나 구 러시아의 잔재로 세무신고 및 조사 등이 느리고 관재적인 행정이 남아있음
  - ☞ 진출기업차원의 특별한 대응책은 없으나 관료적 행정의 특성상 세무 당국의 협조요청시 최대한 신속히 응하는 것이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에스토니아의 경우 배당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제도가 있음
  - ☞ 과세기간의 세율보다 배당시의 세율에 유의해야함
- 우리나라 유럽현지기업을 통한 재진출시 그룹사에 대한 세무결손금 통산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각 국의 적용 요건이 상이하므로 진출시 유의
- 우리나라 해외지주회사 진출이 많은 홍콩 등에 대해 조세피난처로 지정하여 관련세금의 공제가 어렵고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홍콩, 케이만 군도 등 각 국의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국가를 경유한 진출시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현재까지 이전가격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발트3국 과세당국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전가격과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



- ☞ 사례가 부족하나 OECD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이전가격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리투아니아의 경우 ‘Secret Comparable’을 과세당국이 활용하고 있으니 소명에 더욱 유의
- 타 진출국과는 달리 현지국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특히, 세무 및 현지투자정보는 전무한 실정
- ☞ 국세청,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차원의 세무 및 투자관련 정보책자 발간으로 현지 예비투자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제공이 절실함

### □ 주요 세무이슈

구 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배당에 대한 감세정책	내국배당 외국배당	내국배당 외국배당	내국배당
그룹사에 대한 정책	있음	없음 단, 일정요건의 세무결손금양도가능	없음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자유항 및 지역 (Free ports and zones) - 톤세혜택 - 기부에 대한 혜택 - 실질적인 승인받은 장기투자 혜택	- 자유경제구역 (Free economic zones) - 소규모법인 혜택 - 톤세 - 특정고정자산투자에 대한 혜택 - 가속상각제도	없음 (평등함)
조세회피에 대한 정책	- 이전가격과세 - 과소자본세제 - 조세피난처	- 포괄적 룰 - 이전가격과세 - 과소자본세제 - 2)CFC - 조세피난처	- 포괄적 룰 - 이전가격과세 - CFC - 조세피난처
APA(주요 이슈없음)	없음	'12년 도입	없음

2) CFC : 저세율 국가의 유보금액에 대한 배당간주 정책

### 3

## 발트3국 진출사례 분석 및 시사점

### □ 발트3국 한국 전자업체들의 ‘텃밭’

- 우리나라 가전 대기업의 발트3국 진출 성공사례가 언론매체에 보도
  - '10년 TV, 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에서 50%이상의 시장점유율
  - 향후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전자업체의 매출급성장이 기대

#### 진출전략 인터뷰(1)

발트3국은 A사가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 대표적인 사례로 발트3국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더 큰 시장인 서부러시아와 CIS시장의 테스트마켓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 성공모델은 벤치마킹되어 러시아 진출에 활용

- A사 CIS총괄전무, 언론인터뷰, 2006 -

#### 진출전략 인터뷰(2)

B사는 A사보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진출했으나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소비자조사를 통해 IT와 인프라가 발달한 발트시장에 맞춘 영업전략으로 매출과 점유율확대를 꾀하고 있다.

- B사 현지법인장, 언론인터뷰, 2006 -

- 발트3국 진출의 성공요인
  - 신흥시장의 조기진출('99년 진출) : 러시아와 유럽에 가려져있던 발트3국 시장에 과감히 진출
  - 철저한 소비요인 분석 : 구 러시아연방 당시 소비제품의 경험이 부족한 데다 러시아시절 무상으로 받은 주거시설 덕분에 소비성향이 매우 높음
  - 발트3국외 인근국가로의 교두보 : 내수시장을 시작으로 인근 거대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적극 활용

- 현지화 전략 : 라트비아 국민스포츠인 아이스하키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것을 포착 공식 타이틀 스폰서업체로 참여하여 국민적 브랜드로 거듭남(A사 ‘기업 PR상 수상’)

□ **현지의 예상치 못한 투자여건으로 고전**

- C사는 디스플레이소재필름 전문 생산기업으로 북유럽과 중, 동부유럽, 서유럽 우회수출을 목표로 '08년 진출하였으나 현재 1명의 현지직원만을 파견한 채 담보상태에 있음

진출전략 인터뷰(3)

- 1) 현지진출은 현지 바이어와의 친분을 통해 발트3국에 '08년 진출하고 처음 몇 년간은 투자기간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현지채용규모를 늘릴 예정이었음
- 2) 진출시점이 세계경기침체가 시작되던 시기로 사업정상화가 장기화
- 3) 특히, 실업률 극복을 위해 라트비아에서 외국인기업에 대한 최소고용의무를 입법하여 최소5명이 유지되어야 하는 바, 서류상 직원을 채용하여 뜻하지 않은 비용이 과다 투입되고 있음  
 본 법률은 올 7월 폐지(이러한 법률이 수시로 생겼다 없어지기도 함)되었음
- 4) 일정 규모이하의 현지법인은 파견직원의 비자발급이 어려움
- 5) 구 러시아 잔재가 남아있어 행정이 느리고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으나 점차 EU식으로 변하고 있음
- 6) 경제의 많은 부분은 러시아인들이 소유하고 있어 라트비아인과의 갈등의 소지도 있음
- 7) 라트비아는 EU가입 후 제조업이 급격히 쇠락한 상황임


- C사 본사 부장, 서면 인터뷰, 2012 -

○ C사의 발트3국 진출 담보요인

- 진출 시점 : 진출초기와 세계 글로벌경기침체시기가 맞물려 성장동력을 찾기 힘든 점
-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장분석 : 세부적인 소비시장 및 진출방안에 대한 분석보다 발트3국의 진출 비전을 쫓아 기존 바이어를 통한 막연한 진출
- 현지 법률에 대한 대응미비, 구 러시아의 잔재

## □ 시사점

- 유럽의 신흥 진출교두보 : 발트3국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러시아, CIS와 유럽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어 한-발트간 경제협력무드와 맞물려 한국 기업의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
- 제조기지로 활용하기보다 소비기지(판매법인)로 활용가능성이 높음
- 진출 사업품목에 따라 발트3국 및 인근 시장에 적합한 품목을 미리 선정하여 진출하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이는 길임
- 상기 성공사례를 토대로 작은 인구의 나라로 각종 브랜드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확대전략을 검토해 볼만 함
- 관료주의(구 러시아 잔재)는 EU가입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임

	<p><b>가장 긴 인간의 피, 발트의 길</b></p> <p>'89년 8월 발트의 세나라 사람들은 소련의 발트3국 지배에 대한 부담함을 알리기위해 2미터도 안되는 팔너비만큼의 공간으로 손에 손을 잡고 3국을 종단하는 678km의 인간피를 만들어 '자유'를 외침</p> <p>결국 90년 리투아니아독립을 시작으로 발트3국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쟁취 하나의 마음으로 맨손으로 냉전에 맞서 북위에 항거하는 인간의 선함을 드러낸 '발트의 길' 사건이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 한국발트친선협회 -</p>
--	--

## 4 발트3국 조세 요약

### □ 법인에 대한 세금

구 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b>1. 거주 법인</b>			
법인소득세율	15% 소기업 : 9%	15%	21% ( '15.1.1부터 20%)
과세표준	전세계소득	전세계소득	전세계소득 단, 유보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배당할 경우 과세
자본이득		사업소득의 일부만	배당시에만 표준세율
이중과세조정방법	있음(세액공제법)	있음(손금방법) 배당금은 해당무	있음(세액공제법)
<b>2. 비거주법인</b>			
법인소득세율	15%	15%	21% ( '15.1.1부터 20%)
자본(양도)이득 (거주법인주식거래) (원천)지점세	없음 단, 예외규정있음	없음	0% 단, 예외규정있음
(원천)배당	10% 0% EEA국에 대한 별도규정 있음	15% 0% 배당금 수령법인이 12개월 동안 최소 10% 지분 보유시 단, 조세피난처제외	21% ( '15.1.1부터 20%)
(원천)이자	0% 5% 관계회사 지급 등 예외규정	10% 0% 예금이자와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이자 EEA거주자와 조세 조약체결국가	0%

구 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원천)사용료	5%, 15%	10% 0% EU안의 관계법인	10% (역외지급은 제외)
(원천)기술료 Technical FEE	10%	0%	10% (국외수행용역 제외)
(원천)경영자문료 Management Fee	10%	0%	10% (국외수행용역 제외)  21% (이사의 제공용역)

□ 개인에 대한 세금

구 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1. 거주 개인			
소득세율	25% Flatrate	15% Flatrate	21% (*15.1.1부터 20%)
자본이득	15%	15%	배당시에만 표준세율
이중과세조정방법	있음(세액공제법)	있음(손금방법) EU국가나 조세조약 체결국으로부터 소득 은 비과세	있음(세액공제법)
2. 비거주 개인			
소득세율	25% Flatrate	15% Flatrate	21% (*15.1.1부터 20%)
자본이득 (거주법인주식거래)	없음 단, 예외규정있음	없음	없음(예외)
(원천)근로소득	25%	15%	0%
(원천)배당	10%	20%	21% (*15.1.1부터 20%)

구 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원천)이자	10% 0% 예금이자와 정부투자 기관 및 산하기관 이자	15 0% 예금이자와 정부투자 기관 및 산하기관 이자 366일 거치이후 상환이 시작되는 대부 및 채권이자	0%
(원천)사용료	25%	15%	10% (역외지급은 제외)
(원천)기술료 Technical FEE	25%	0%	10% (국외수행용역 제외)
(원천)경영자문료 Directors t Fee	25%	0%	10% (국외수행용역 제외)  21% (이사의 제공용역)

### □ 기타세금

구 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부에 대한 세금 (Wealth tax)	없음	없음	없음
상속, 증여세	없음	있음	없음
VAT	22%, 12%	21%, 0%	20%, 9%, 0%

### □ 환율정책

구 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환율	<sup>3)</sup> ERM II 기준금리 1%내의 변동환율 0.702804라트=1유로	ERM II 고정환율 3.45280리타스=1유로	유로존 (11.1.1~)

## 5

## 발트3국 단일세율(Flat-tax)제도의 장점과 단점 분석

### □ 단일세율(Flat-rate Tax) 국가

- 발트3국은 모두 단일세율(FLAT-TAX) 채택국가
  - 에스토니아는 동유럽에서 최초로 '94년 단일세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라트비아('95년), 리투아니아('01년)역시 단일세율 채택국가임

### □ 단일세율(Flat-rate Tax)

- 개념 : 효율성 · 단순성에 중점을 두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
  - 각종 비과세 · 감면 · 공제제도폐지
  - 현재 발트3국의 단일세율제도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모든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세금정책은 단일세율의 목적과 일맥상통함
- 이론적 배경 : '62년 자유주의경제학자 Milton Friedman에 의해 도입제안
- 장점
  - 조세의 효율성, 단순성, 투명성을 제고함
  - 각종 공제감면의 폐지 및 단일세율적용으로 과세기반의 확충 및 세율 인하
    - ⇒ 고소득층의 조세회피 유인이 축소, 지하경제 활성화
  - 세법이 단순화되어 징수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감소도모
- 단점
  - 세율구조의 역진성 및 대규모 재정수입 감소가능성(재정리스크)
  - 저소득층의 조세저항 우려

3) ERM II : 일정범위내에서 통화의 환율을 결정하는 유럽환율매커니즘(유로전 전환과정)



## □ 발트3국의 단일세율제도 도입

- '90년대 초 독립을 이룬 발트3국은 빠른 경제 활성화를 통한 독립체제 완성을 위해 외국투자자의 유치가 필수적이었음
- 또한, 舊 소련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재정수요를 증대를 노림
- 현재, 결과적으로 단일세율구조가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지 않으며 단일 세율 또한 점차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기업 우선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여 대응하고 있음
- 또한,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일부정당에서 단일세율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내 경제학자는 단일세 채택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한 세계적 조세흐름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 시사점(정책상)


- 우리나라는 누진세를 채택하여 소득구간별 세율이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11년 부자증세로 정부재정을 확충하자는 논리로 '버핏세'를 신설하는 등 누진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각국의 조세제도는 각국 현실에 근거한 정책으로 이론적인 수준에서 동구권의 단일세율 제도를 비교해보는 것으로 본 세정연구는 종결

**Klaipeda FEZ offers optional business relocation**

- Industrial sites with newly built infrastructure connection points and detailed planning
- Industrial warehousing and commercial premises for lease more than 50,000 sq.m.
- Built to suit facilities exceeding investors' requirements
- Design and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ervice

**Klaipeda FEZ tax incentives:**

- No corporate income tax for 6 years and 50% reduction for the following 10 years
- No real estate tax
- No tax on dividends for foreign investors



Orion Global PEV, Thailand

BNTFC Ireland

AD BEK LEZ, Lithuania

Pack Klaipeda, Lithuania

5<sup>th</sup> WORLD'S BEST FREE ECONOMIC ZONE

☼ 리투아니아 KLAIPEDA 자유경제지역 전경 ☼



# 제 2 부 리투아니아

(Republic of Lithuania)



# 제 1 장 리투아니아 국가개황

1. 국가개요
2. 정치 · 경제동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1 국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발트해 동부</li> <li>◆ 수도 : 빌니우스</li> <li>◆ 인구('11년) : 3.5백만</li> <li>◆ 종교 : 카톨릭(79%)</li> <li>◆ 언어 : 리투아니아어(공용어)</li> <li>◆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li> <li>◆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lia Grybauskaitė 대통령</li> <li>(Andrius Kubilius 총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교 : '91.10.14.</li> <li>◆ 대외정책 : 친서방</li> <li>◆ 면적 : 65천km<sup>2</sup>(한반도의 2/7)</li> <li>◆ 통화단위 : Litas(LTL)</li> <li>◆ GDP('11) : 426억달러</li> <li>◆ 1인당 GDP( ) : 13,140달러</li> <li>◆ 환율(US\$1당) : 2.47('11 연중)</li> <li>◆ 주요자원 : 토탄, 호박, 철광석 등</li> </ul>
--	---

# 2 정치·경제 동향

## □ 친서방 정책

- CIS인근 국가들 중 가장 먼저 NATO에 가입신청서('94)를 제출하여 '02년에 가입하였으며 '04년 5월 두 개의 핵시설을 폐기시키는 조건으로 EU가입 회원국이 되었음
- '03년 국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에 참가하는 등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친 서방 정책으로 러시아와는 다소 정치적 관계가 소원함

## □ 에너지 대외의존도

- 에너지의 80%를 대외에 의존하는 구조로 '06년 러시아의 원유공급중단으로 에너지위기를 맞는 등 수급불안이 상존하나 기존의 러시아에너지 루트 외 EU의 일원으로 EU의 가장 큰 에너지 공급국가인 CIS국가로부터의

- 공급으로 발트3국 중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국가로 거듭남
- 발트3국의 유일한 유전보유국으로 인근 국가로 에너지를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국이며 2020년까지 새로운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고 러시아를 잇는 LNG터미널이 2015년까지 완공될 예정

### □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 선진국

- 유럽에서 처음으로 광케이블랜을 도입하는 등 최신 정보통신망을 보유한 국가로 최고의 기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음
- ※ '11년 인터넷다운로드 스피드 세계1위(2위 한국)

“리투아니아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내가 만약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결코 리투아니아에서 사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ilja laurs, CEO of Getjar (안드로이드마켓)*

### □ 경제 동향

- 대외경제 의존국가로 '09년 글로벌 경제위기 후 안정적 성장세를 보임

#### 리투아니아 경제성장률 및 주요경제지표

(단위 : %, U\$/인)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망
경제성장률(%)	2.9	-14.8	1.4	5.8	1.8
1인당 GDP(달러)	14,051	11,024	10,931	13,140	12,770
소비자물가상승률(%)	10.9	4.5	1.3	4.1	2.7
총 외채잔액/GDP(%)	67.0	87.0	87.4	76.6	72.1
단기외채/총 외채(%)	26.9	17.9	17.5	18.5	18.4

【출처 : 2012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 경제규모에 비해 다양한 제조기반 보유

- 구소련연방 시절 공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음식료, 섬유, 목재, 전자, 석유 화학등의 공업기반을 조성하였으며 '04년 EU가입으로 관련제품의 EU 시장수출

- '13년까지 유럽연맹의 결속지원금 70억원
  - '04~'06년까지 약 30억 유로의 유로결속지원금을 지원받았으며 '07~'13년까지 약 70억원의 추가적인 결속지원금 지원예정
  - 【출처 : 리투아니아 재정국】
- 다양한 국제적 행사 개최
  - '09년 빌뉴스 유럽문화축제, '11유럽안보협력기구회의(OSCE), '11년 유럽 남자농구챔피언쉽 등 국제적 행사유치로 유럽각국의 이목 집중
  - '13년 하반기 유럽연맹국회의 개최예정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 주요 교역 현황

- 외교관계 수립 : '91. 10. 14.
- 주요협정 체결현황 : 무역협정('93), 투자보장협정('93), 사증면제협정('02), 이중과세방지협정('06)
- '09년 세계금융위기 감소를 제외하면 견고한 증가흐름('07년 대비 25%증가)

#### 對 리투아니아 수출현황

(단위: 천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금 액	101,086	112,925	80,014	114,862	126,890
증 가 율	9.3	11.7	-29.1	43.6	10.5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제 2 장

# 리투아니아 조세제도

1. 법인소득세
2.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3. 이전가격세제
4. 원천징수
5. 부가가치세
6. 기타주요조세
7. 개인소득세



# 1 법인소득세

## 가. 일반적인 원칙

### □ 근거법령

- '04년 제정된 「조세행정에 대한 법령(On Tax Administration)」에 일반적인 조세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률은 조세 분쟁의 해결 절차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조세 법률 시행 시 준수해야 할 기본 개념 및 규정, 조세 관련 법률 규정의 기본 원칙, 리투아니아에 적용되는 조세 목록, 조세 담당자들의 기능, 권리 및 의무,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조세의 산정 및 납부, 조세 및 관련 금액의 강제 회복 절차에 대해 규정
- 원칙은 해당 사안이 특별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 특별 법률(예 : 부가가치세, 법인 소득세)이 “조세 행정”에 관한 일반 법률보다 우선 적용

## 나. 법인소득세

### □ 세율

- 일반 법인세율 : 15%
- 5% 법인세 적용
  - 법인의 피고용자들의 평균 인원수가 10인을 초과하지 않고 소득이 LTL 500,000(대략 EUR 144,8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소정 면세 적용)
  - 과세 기간 중의 수입이 농업 활동에서 나온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자의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 0% 법인세 적용
  - 피고용자 중 40% 이상이 장애인이거나,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업

- 투자액이 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자유 경제 구역에 설립된 회사  
(6년 간 0% 세율이 적용되고 이후 10년 간 표준 세율의 50%)
- 제한된 작업 능력을 가진 피고용자들이 50%를 넘는 생산 회사  
제한된 작업 능력을 가진 피고용자들의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75%, 50%, 또는 25%)

○ 비영리 법인

- 매출이 LTL 1백만(약 289,600 유로)을 초과하지 못하면, LTL 25,000 (약 7,240 유로)의 액수가 0%로 과세되고, 나머지는 15%로 과세

□ 납세의무자

- 리투아니아 및 외국 과세가능 기업들은 법인 납세자들로 간주
  - 리투아니아 과세가능 기업들은 리투아니아에 등록되어 있고 법인(legal person)의 상태를 가진 모든 종류의 기업
  - 외국 과세가능 기업들은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법 상에 편제된 모든 종류의 기업(법인상태 담보 필요없음)

□ 과세표준

- 리투아니아 기업 : 전세계 소득
- 리투아니아 소재 외국기업 : 리투아니아 발생소득(고정사업장)
- 고정사업장 규정
  - 고정적으로 활동을 수행
  - 종속된 대표자(대리인)을 통해 활동을 수행, 또는
  - 건설 구역, 건설장비, 조립 또는 설비물을 사용
  - 천연 자원에 대한 투자 및 추출을 위한 시추공과 선박을 포함하는 설비나 건설 장비를 사용

6개월 넘게 활동을 수행하고 보통 상업적 활동의 온전한 주기가 있다면  
그 외국 회사는 리투아니아에서 고정적인 사업장으로 간주

● 진출시 유의사항 ●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은 지역 세무관서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각종 공제적용 불가능

○ 과세표준 계산 <(1)-(2)-(3)-(4)-(5)>

- (1) 과세가능소득(taxable profit)
- (2) 비과세소득(tax exempt income)
- (3) 허용가능 소득공제(allowable deductions)
- (4) 부분허용가능 소득공제(partly allowable deductions)
- (5) 고정 사업장을 통해 외국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과 관련된 공제액  
(deductions relating to the income earned by a foreign entity through the PE)

○ 비과세소득(tax exempt income)

- EU에 설립된 회사나 리투아니아가 이중 과세 조약을 맺은 국가에 등록된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매매에서 나온 이득  
(요건 : 적어도 2년 간 25%를 넘어야 함)
-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료 수신
- 자산 처분으로부터 얻은 파산한 회사의 수입
- 헤지(hedging) 목적의 금융 파생상품의 평가절상을 제외한 고정 자산 및 부채의 평가절상
- 위약금 및 벌금 등의 수신

○ 허용가능 소득공제(allowable deductions)

- 기업 활동에 있어 소득을 올리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필수적인 모든 실제 발생 비용

○ 부분허용가능 소득공제(allowable deductions)

- 일정기준으로 세금 공제 가능할 수 있는 부분
  -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 고정 자산의 유지, 수리 및 재건축(자본적지출 제외)
  - 업무상 출장
  - 광고 및 엔터테인먼트
  - 일반 재고 손실
  - 세금
  - 불량 대출
  - 개인 소득세 대상이 아닌 피고용자들의 수당 지급
  - 신용 기관 및 보험 회사의 지급
  - 인가된 보조금
  - 멤버십 비용
  - 세금 결손
- 공제되지 않는 경비 예시
  - 조세피난처로부터 구매된 재화(서비스)가 18개월 넘게 비용 지불되지 않은 경우, 그 재화들(서비스들)의 비용
  - 조세피난처로의 지출이 조세 피난처의 일상적 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조세 피난처로의 지출
  - 위약금 및 디폴트 이자
  - 이자 및 관련 당사자의 의무와 관련된 다른 지불
  - 손해에 대한 보상
  - 배당 및 기타 수익 배분

□ 배당금

- 주식의 10% 미만을 보유하고 12개월 이상 동일한 비율의 표결권을 허용하는 리투아니아나 외국 회사로 지불된 배당금 : 세금 공제

(조세피난처로의 지불은 제외)

※ 기타의 경우 배당금은 15%의 원천징수대상

- EU의 한 국가 내에 설립되어 있고 수익이 소득세나 그에 해당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외국 기업들로부터 리투아니아 회사가 받은 배당금 : 세금 공제
- 수익이 해당 국가 내 법인 소득세나 그 국가의 그에 상응하는 세금의 대상이 될 경우, 10% 이상의 주식수를 보유하고 12개월 이상 동일한 %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리투아니아 회사에 대해 외국 회사가 지불한 배당금 : 세금 공제

(조세피난처로부터의 지불은 제외)

기타의 경우 배당금은 15%의 원천징수대상

## □ 세무결손금

- 세무결손금(증권 또는 금융 파생상품의 처분으로부터의 결손 제외)은 결손이 발생된 경제 활동이 지속되는 경우 무제한 이월
- 증권 또는 금융 파생상품의 처분으로부터의 결손은 증권 또는 금융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득을 차감하기 위해 5년 동안 이월
- 세무결손금은 소급적용불가

### ◆ 진출시 유의사항 ◆

계열사간 결손금 상계(다른 EU국가를 통한 손자회사 진출시 유의)

- '10년 이후 과세기간 발생한 세무 결손금은 다음 기준들이 만족되는 경우 그룹을 이루는 다른 회사의 수익에 대해 상계가 가능
  - 1) 최소 2년 동안 계속해서 그룹의 구성원으로 모 회사는 직간접적으로 자회사 주식의 적어도 2/3를 소유
  - 2) 결손금을 양도하는 외국 기업이 EU 내 세금 거주자이고 그 외국 국가에서 결손금을 이월할 가능성이 없을 때
    - ※ 증권 또는 금융 파생상품의 처분으로부터의 결손은 증권 또는 금융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득에 대하여만 상계가 가능
- 체납이 있는 회사는 세무 결손금양도 미허용

## □ 자본이득

- 리투아니아 기업이 벌어들인 자본 이득은 소득세 목적으로 납세가능 소득 안에 포함하고 자본 이익은 제한된 수의 피고용자들, 회사의 소득이나 특정 활동들로 인해 5%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15%의 세율로 과세

## □ 그룹회사

- 법인 소득세 목적의 그룹 합병은 가능하지 않으나, 세무결손금은 그 회사들 사이에 양도가능

##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 일정 채무비율을 초과하는 채무관련이자는 공제불가
- 과소자본세제 적용요건
  - 주주는 납세 기간의 마지막 날 리투아니아 기업을 관리
  - 주주는 직(간)접적으로 리투아니아 기업 내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
  - 주주는 관련 당사자와 함께 리투아니아 기업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이 주주에 의해 소유되는 부분은 10% 미만
- 비공제 이자비용계산 : 지분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 채무 관련 다른 경비들, 즉 환전 손실에 대해서도 적용
-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독립적인 개인들 사이에 동일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 상기 과소 자본 규칙 배제가 가능

## □ 세금징수

- 매년 법인 소득세 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5개월 안에 신고하여야 하며, 납부는 9개월 안에 납부(이전 납세 기간의 결과에 기초하여 선납)
- 원천징수세 거래일 익월 15일 안에 신고,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 않고 리투아니아 납세자으로부터 납부되면, 원천



징수세 비용은 기업 소득세 목적으로 공제불가

- 지불 또는 수취된 배당금을 신고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세는 지불이 이루어졌던 익월 10일까지 납부

## 2 외국인 투자관련 세금 감면혜택

### R&D투자 관련 혜택

- 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비용은 과세소득의 3배까지 공제
-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장기자산은 2년내 상각 가능

###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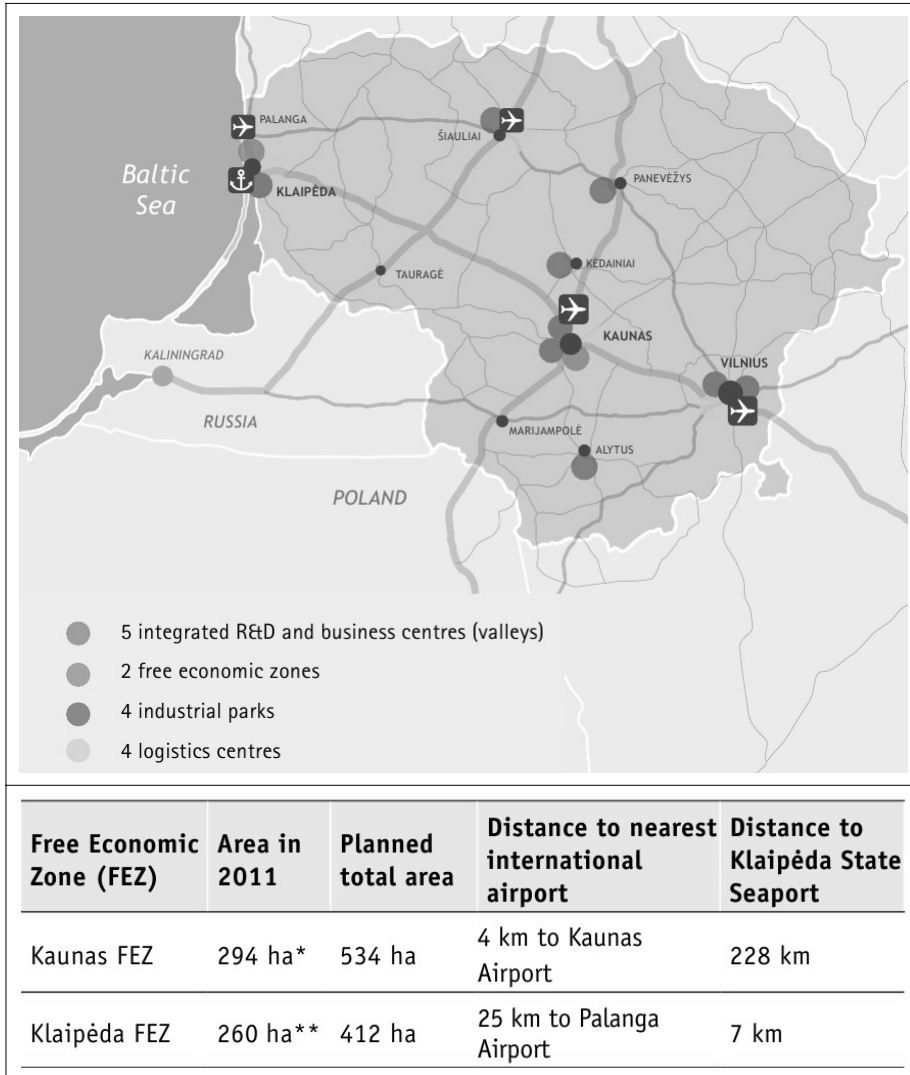
- 새로운 기술관련 투자기업은 과세소득의 50%까지 절감가능(5년간)

### 자유경제지역 혜택

TAX	일반세율	2 FEZs
법인소득세	15	첫 6년간 면제 다음 10년간 50%감면
배당	0~15	0%
부동산세	0.3~1	0%

- 요건 : 최소 75%의 수입이 경제자유구역내 생산되거나 경제자유구역내에 도매업이 이루어질 때
- '12년부터 IT, 항공운송, 우주선유지서비스도 감면사업에 포함됨

○ 리투아니아 투자지도



【출처 : 리투아니아 투자청】



### 3 이전가격세제

#### □ 이전가격세제 근거 규정

- 리투아니아의 이전가격세제는 '01년 『CIT ACT』 4조(article 4 paragraph 2)를 통해 정상가격에 대한 법적 기초를 제공함
- '04년 4월 제정된 재무부 Decree 1K-123을 통해 '04년 사업연도 이후 제출하여야하는 이전가격 법정서식을 제공
- '07년 과세당국에서 ‘납세자를 위한 이전가격지침’을 발간하여 제공하였으며 관련지침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음
- 리투아니아는 OECD가입국은 아니나 이전가격지침은 OECD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음

#### □ 최근 이전가격세제 조사

-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한 고의 손실기록 범인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상시조사가 진행중으로 최근 제약업종에 대하여 집중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전가격보고서의 적합성 및 비교가능성 등 전통적인 조사항목(재화)에 더하여 재무적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Comparables**  
 내부 비교가능성이 선호되며 리투아니아 국세청은 비교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단계를 제공하고 있음  
 (지리적, 독립성, 기간, 활동성, 정보접근가능성, 차이조정)

- 1단계) 리투아니아 기업간의 비교가능성
- 2단계) 발트3국 기업간
- 3단계) CEE region
- 4단계) pan-European region

- Secret Comparable 이슈
  -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이전가격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과세당국이 보유중인 자료를 활용하여 이전가격조정을 할 수 있음

◆ 진출시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비공개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OECD가이드라인의 예외적인 적용으로 진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함

※ 우리나라 비공개정보 이용하지 않음

□ 특수관계규정

- 모법인, 모법인이 의결권을 최소 25%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구성원
- 다른 한쪽이 다른 법인의 의사결정을 할 권리를 지니는 양방법인
- 직·간접적으로 다른 법인의 25%이상의 지분 또는 25%이상의 의사결정권을 지니는 한 법인과 또 다른 한 법인의 관계
- ‘associated parties’
  - 통상의 특수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인규정’이 사용됨
  - ‘관계법인’은 일방의 이전가격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위로 의결권이나 주식소유비율에 불구하고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됨

□ APA

- '10년 말 리투아니아 국회는 Article 37(1) of the law를 통과시켰으며 본 규정은 '12.1월부터 발효될 예정
- 다국적기업의 APA 사례를 따라 신청여부 판단

□ 문서제출

- 아래 기준에 한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은 이전가격문서를 보관, 제출할 의무가 있음
  - 거래발생일 이전 기업의 영업 소득이 10,000,000LTL(대략 2백만 유로)을 초과
  - 금융 회사들 및 신용 기관들

- 보험 회사들
- 거래발생일 이전 외국 기업의 귀속 수입이 10,000,000LTL(대략 2백만 유로)을 초과하는 PE를 통해 활동하는 외국기업
- 과세당국의 요청 후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리투아니아 번역문 제공 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 단, 추가 증거 없이 정보의 신뢰성 식별이 충분하다면 원래의 형식으로 제출가능

## 4

## 원천징수

### □ 과세대상

- 이자
- 저작권 지불, 라이선스 및 노하우 비용과 기타 로열티 지불
- 리투아니아에 위치한 부동산의 처분이나 대여로부터의 소득
- 배당금을 포함하여, 수익 배분으로부터의 소득

### □ 세율

- 이자 및 로열티를 제외하고,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
- 4EEA 국가들이나 리투아니아가 이중 조세 조약을 맺은 국가들 안에 설립된 회사들에게 지불된 이자에 대해서는 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
- EU 세금 거주자들에게 지불된 로열티에 대해 1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 (2011년 7월 1일 부터 0% 세율 적용)

4) EEA : EU의 15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합쳐서 구성된 거대한 유럽단일 통합시장

- 법인세 면제되었던 유보소득의 배당시 15% 원천징수
- 개인들에게 지불된 배당금은 20% 개인 소득세의 대상

## 5 부가가치세

### □ 근거법령

- VAT 체계는 지침 2006/112/EC를 따르고 VAT 관련법 규정이 국내 입법으로 이행

### □ 과세대상

- 리투아니아 안에서 재화가 공급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뿐 아니라 재화가 리투아니아 내로 수입되거나 다른 EU 소속 국가로부터 취득되는 경우, 납세가능한 사람들에 의해 고려될 재화, 서비스들의 공급 및 제공에 VAT가 적용(리투아니아 안에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포함)
- (B2B 규칙)서비스가 VAT 납부자들인 납세 가능한 사람들에게 제공될 때, 그 공급 장소는 구매자가 설정된 장소라고 간주  
(B2C 규칙)서비스가 리투아니아 납세가능 인에 의해 VAT 납부자들이 아닌 개인들에게 제공될 경우, 서비스의 공급은 리투아니아 VAT의 대상

### □ VAT 납부자(부담자)

- 소득이 년 간 100,000LTL(대략 29,000 유로)를 초과하는 리투아니아사람들이 VAT 납세자들로서 등록
- 기업이 VAT면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VAT등록 면제가능
- 외국인들은 리투아니아에서의 그들의 활동이 VAT 대상인 경우 리투아니아

VAT에 등록 (구매자에게의 VAT 양도를 설명할 의무나 제로 VAT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외국인에 대한 100,000LTL (29,000 유로)과세문턱 적용불가

- 외국인들이 EU 소속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외국인들은 재무대리인을 통해 리투아니아 내 VAT에 대해 등록

## □ VAT 세율

- 표준 VAT 세율 : 21%
- 농부에 의해 이루어진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 6%(보상세율)
- 저율적용(9%)
  - 책과 비정기 간행물
  - 주거용 난방 공급 및 온수 공급(2011년 12월 31일 까지)
  - 호텔 숙박 및 기타 특별 숙박 서비스(2011년 12월 31일 까지)
- 저율적용(5%) : 소정 의약품 (201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가능)
- 영세율(0%)
  - 유럽 연합 밖으로의 수출, 다른 소속 국가로의 재화 공급
  - 유럽 국가들의 중앙은행 및 유럽 중앙은행으로의 금 공급
  - 외교적 임무에 의도된 재화 및 서비스
  - 자선활동에 대한 공급
  - 해상 선박 및 국제 항로 상의 비행물체에 대한 공급 등

## □ VAT 비과세

- 비영리 기업들에 의해 생산/제공될 경우, 건강 보험, 사회 및 문화적 서비스와 스포츠 관련 재화 및 서비스들뿐 아니라, 자선 및 지원 목적의 재화 공급 및 서비스 제공, 우편 서비스,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 대여나 거주 및 기타 부동산 자산 등을 포함하는 다른 서비스들은 VAT면제

## □ VAT 매입세액공제

- VAT 납세자는 재화/서비스가 VAT 납세자의 이하의 활동에 사용된 경우, 재화/서비스에 대한 매입(또는 수입) VAT 공제가 가능
- 재화/서비스들이 VAT 납세가능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VAT 납세자는 VAT 납세자로서의 등록 날짜 전에 취득(또는 수입)된 재화/서비스들에 대해 매입 VAT를 공제가 가능
- 매입 VAT는 VAT 납세자가 적절한 송장을 보유한 경우에만 공제됨
  - ※ VAT 금액은 리투아니아 통화 단위로 기재되어야 하며 VAT 납세자는 재화/서비스의 구매자로서 특정되어야 함

## 6

### 기타 주요조세

## □ 소비세(물품세)

- 과세대상
    - 비소비세 에너지 제품, 알코올, 알코올 드링크나 토바코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 소비세 대상 창고의 소유자, 등록 및 미등록 무역업자
    - 수입의 경우, 소비세는 수입업자가 납부(다만, 수입 상품이 소비세대상 상품의 참고로 반입되지 않아야 함)하며,
- 적용 과세기준 : 리투아니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상품

대표적인 리투아니아의 목적세로 고세율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09년 1월 현재 순수 에탄올의 헥토리터 당 LTL 3840에서 LTL 4140까지의 에탄올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였으며 EU가 정한 담배에 대한 최소 소비세율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담배 소비세가 인상될 것임  
 연료에 관한 최소 EU 소비세율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석유 시장에서의 유리한 위치와 관련하여, 정부는 석유 가스 및 기체 탄화수소뿐만 아니라 휘발유, 디젤 연료와 등유에 대한 소비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 □ 부동산세

### ○ 과세대상

- 토지를 제외하고 리투아니아 안에 위치한 부동산
- 부동산을 소유한 리투아니아인과 외국인들은 그 부동산이 그들의 상업적 활동들(부동산 임대포함)에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세를 납부
- 거주 부동산, 차고, 농장 및 기타 개인들에 속하는 유사 부동산은 부동산세의 대상이 아님

### ○ 세율 : 부동산 납세 가치의 0.3%에서 1%까지

- 지방 자치 단체들은 매년 6월 1일까지 다음 해를 위한 정밀 세율을 확정
- 부동산의 과세가액은 적어도 5년 마다 그 부동산의 목적에 따라 매스(mass) 평가 방법이나 개축 가치를 적용함으로써 설정된 부동산의 평균 시장가
- 새로운 가액은 등록 센터를 통해 2011년 1월 1일 발표  
(부동산 소유자가 별도 감정평가요청 가능)

### ○ 신고납부 : 익년도 2월 1일전에 납부(법인은 1/4선납)

## □ 토지세

### ○ 과세대상 : 개인 토지의 소유자들에 의해 납부

(산림, 공용 도로, 대사관 부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 세율 : 1.5%

### ○ 납부기한 : 상반기 중에 취득되었으면 토지세는 초년부터 발생 하반기 중에 취득된 경우, 토지세 이듬해에 발생

## □ 토지임대세

### ○ 과세대상 : 임대용 토지

### ○ 세율 : 1.5%~4%(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함)

### ○ 토지가액 : 관련규칙에 따라 토지임대 계약시 언급됨

## □ 환경세 등

- 자동차(자가용) 이용자 및 상용 목적의 주둔지(농장, 공장) 오염원에 따라 납부되는 공해세
- 수입업자 및 환경위험재화(축전기, 타이어, 자동차 필터 등)의 리투아니아 생산자들에 의해 납부되는 환경위험재화에 부과되는 세금
- 리투아니아 안으로의 포장재 수입업자나 리투아니아의 포장재 제조업자들에 의해 납부되어야 하는 포장세
-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금은 포장/제품/오염원의 종류, 오염량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특정 소비자 가격 지표 및 오염 회피 목적의 달성 수준에 따라 산출

## □ 복권 및 도박세

- '09년부터 “도박 및 복권 세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
- 복권 운영시 5%의 과세기준이 복권 및 도박 과세 기준에 적용
- 빙고, 베틱, 토털라이제이터의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
- 고정 세금 : 운영 기계 도박 및 테이블 게임에 부과

## □ 사회부담금

- '09년부터 사회보험 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소득 원천 목록이 로열티와 스포츠맨과 예술가의 보수까지 확대
- '09년 로열티와 관련하여, 고용주는 국가 보험예산에 추가 7%(고용자 1%) '10년 고용주는 추가 14%를 납부(고용자 2%) '11년 고용주는 추가 28%를 납부(고용자 3%)



## 7 개인소득세

### □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 라트비아 영주권
- 개인, 사회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입장이 리투아니아에 있는 개인
- 한 납세 년도 중 183일 동안 리투아니아에 체류하거나 2년 연속 휴가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280일 이상을 리투아니아에 체류하며, 그 2년 중 한 해 동안 리투아니아에서의 한 번의 체류일이 최소 90일 이상인 외국인
- 리투아니아 정부에 의한 해외에서의 리투아니아 시민의 고용

### □ 납세의무자 : 거주 및 비거주 개인

### □ 과세소득

- 거주 납세자들은 전세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상이고, 비거주자들은 리투아니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징수함
  - 비거주 개인의 과세소득
    - 이자
    - 이사회 및 관리자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분배 수익 및 연간 보너스에서 발생한 소득
    - 리투아니아에 위치한 부동산 자산의 임대로부터 나온 소득
    - 로열티
    - 고용 소득(PE를 통한 것을 포함하는 리투아니아 원천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 스포츠 활동 소득
    - 공연 활동 소득
    - 리투아니아에 위치한 부동산 자산이나 리투아니아에 등록된 유동 자산의 판매 소득
    - 저작권 또는 유사 권리 위반에 대한 보상

## □ 세율

- 표준세율 : 15%
- 20% 소득세 : 이자, 배당 소득
- 5% 소득세 : 법률가, 공증인, 집행관, 회계사, 회계 감사관, 건축가, 심리학자, 저널리스트 등과 같이 15%의 표준 세율로 징수되는 소정 개인 활동, 프리랜서(자유직업)에 대해 적용

## □ 비과세소득

- 비 생명보험 급부금 및 소정 생명 보험 급부금
- 특정 유형의 연금, 이자
- 선박에 탑승하여 작업 하는 선원의 소득
- 소득을 얻은 사람이 VAT 납세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의 농업소득
-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 대상이 되는) 상속자들이 받은 소득
- 리투아니아 공화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유동 자산이 판매에 앞서 3년 넘게 그 이전에 취득되었을 경우 그 유동 자산, 또는 리투아니아에 위치한 부동산 자산이 판매에 앞서 5년 넘게 그 이전에 취득된 경우 그 부동산 자산의 판매소득
-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판매로부터의 소득으로서 그 판매에 앞서 2년 동안 거주지로 공표되었거나, 부동산 판매로부터의 소득이 EEA 안에 위치하는 새로운 부동산 취득을 위해 사용되었을 경우
- 소정 상황 하의 상금이나 증여를 통해 받은 소득
- 소정 자본 이득
- 소정 장학금
- 정부나 자치단체 예산으로부터 받은 연금, 렌트비, 용돈, 장학금, 프리미엄 단, 조세피난처 관련 소득공제는 불가능

## □ 공제

- 소정 요건의 대상이 되는 생명 보험 프리미엄
- 리투아니아나 다른 EU 소속 국가에 등록된 연금 펀드로 지불되는 연금 부과금
- 최초의 상급 학교 공부를 위해 리투아니아 거주자들이 지불한 금액
-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되었던 주택의 건축이나 획득을 위한 대출 이자

## □ 외국납부세액 공제

- EU 소속 국가들이나 리투아니아가 이중 과세 조약을 맺은 국가들 내에서 별어서 납세된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
- 실질적으로 리투아니아 개인 소득세와 유사한 다른 외국 소득 세금은 외국에서 실제 지불된 소득세 액수로 세액공제 가능  
(해외에서 발급된 공식 증빙서 필요)

## □ 세금 징수

- 납세 년도는 역년, 연간소득세 신고서가 이듬해 5월 1일까지 납세 당국에 제출
- 고용주들은 피고용자들에게 이루어진 노동 보상금 및 기타 유사한 지급 으로부터 개인 소득세를 원천징수

## □ 사회 보장 및 건강 보험 부과금

- 피고용자들의 부과금은 고용 소득의 3%에 해당되고 고용주들은 30.98%를 납부 (피고용자의 부과금은 고용자에 의해 원천징수)
- 자영업자 역시 사회 보장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최대 문턱치가 적용

- '71년 6월 14일자 EU 규정(EEC) 제1408/71과 '10년 5월 1일자 EU 규정(EEC) 제883/2004이 리투아니아에서 개인은 일하는 국가, 즉 업무 활동 장소가 있는 EU 소속 국가에서 의무적 사회 보장의 대상됨에 따라 외국인은 그들의 업무 활동이 리투아니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A1 증빙서나 5)E101 형식이 획득된 경우 제외) 사회 보장 부과금을 납부해야 함
- ('10년 8월 1일부터 '12년 7월 31일까지 채용 후 1년 동안 유효)  
고용 계약 하에 고용된 개인은 최초 연금 보험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음(고용자들에 대한 30.98%가 아닌 7.68%의 사회 보험 부과율적용)
- '09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노동 계약 하에 고용된 사람들은 건강 보험 부과금에 대해 6%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 대상자들(자영업자, 스포츠인, 연예인 및 저작권 계약 조건하에서 소득을 얻는 개인들) 역시 소정 건강 보험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 동일한 규칙이 비거주자들에게 적용된다(A1 증빙서나 E101 형식이 획득된 경우 제외)

#### 고용보험

- 총 급여의 0.1%

#### 세금계산 예시

한 자녀를 둔 기혼의 리투아니아 거주자가 받는 고용 소득(LTL 3,500)에 대한 세금 산출결과를 예시

5) E101 : 다른 유로지역에 고용되어 사회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증명



1. 월간 총 급여(LVL 단위)	3,500
2. 메인 세금 공제 최저한도(*1)	0
3. 한 자녀에 대한 1/2 추가 세금 공제 최저한도	50
4. LTL 3,450에 대한 15% 소득세(1-2-3의 15%)	517.5
5. 피고용자가 납부하는 6% 건강 보험 부과금(1의 6%)	210
6. 피고용자가 납부하는 3% 사회 보험 부과금(1의 3%)	105
7. 순급여 (1-4-5-6)	2,667.5
8. 고용주가 납부하는 30.98% 사회 보험 부과금(1의 30.98%)	1,084.3
9. 보증 기금에 대한 0.1% 납부(1의 0.1%)	3.5
10. 고용주의 총 고용 비용 (1+8+9) 4,587.8	4,587.8
11. 피고용자의 총 세금 부담 (4+5+6)	832.5

(\*1) 메인 세금 공제 최저한도는 이하의 공식에 따라 산출

$$470 - 0.2 * (\text{월별 총 급여} - 800)$$

따라서, 월별 총 급여가 LTL 3,150 이상일 경우, 세금 공제 최저한도는 적용되지 않음

## 제 3 장

# 리투아니아 투자환경

1. 6STEPS 22DAYS
2. 리투아니아 투자방법(설립)
3. 경영
4. 지사 및 연락사무소
5. 합병 및 분할(국제합병)
6. 주식공개 및 기타

# 1 6 Steps and 22Days

## □ 사업시작비용

○ 유한회사 설립단계별 비용(기간)

단계	과정	소요기간	비용(EUR)
1	은행계좌계설 및 자본금납입	1일	~4.3
2	법인등록	2일	~145
3	사업자등록	3일	~57
4	부가가치세 의무등록	10-15일	0
5	운영계좌 설립	1일	0
6	법인 공증	2일	~8.7

【출처 : [www.doingbusiness.org](http://www.doingbusiness.org)】

### ◆ 사업투자하기 좋은나라 ◆

세계은행은 전세계 183개국 중 사업투자하기 좋은 나라 27위로 선정  
 리투아니아 외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도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에 상위랭크

# 2 리투아니아 투자방법(설립)

## □ 투자유형

- ▷ 법인의 설립, 기존 법인의 자본 또는 주식 획득
- ▷ 지사 설립
- ▷ 채권 획득
- ▷ 부동산 또는 동산 등의 고정 자산 창출 또는 획득

⇒ 약 10 LTL(약 5천원)의 등록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간단하게 주식의 양도를 공공 등기에 등록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기존의 사업 및/또는 부동산 투자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 실사 실시

## □ 외국인 투자유형

- ▷ 사적 유한책임회사(uzdariji akcine bendrove-UAB)
- ▷ 공적 유한책임회사 (akcine bendrove-AB)
- ▷ 합명 회사, 합자회사, 투자회사, 농업회사, 협동회사
- ▷ 개인 기업
- ▷ 유럽 회사(Societas Europaea), 유럽 협동 조합(Societas Cooperativa) 및 유럽 경제 이해 단체(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

○ 외국인은 설립자의 사업 이익을 대변하는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를 통해서 사업가능(대표 사무소는 외국 설립자의 대리인 한정되는 사업 활동만 가능)

## □ 사적 유한책임회사 (uzdariji akcine bendrove-UAB)

- UAB는 가장 일반적인 기업 형태이고 소규모 기업에 이상적
- 단순한 경영 구조를 가진 법인체로서 큰 금액의 자본금의 투자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
- UAB의 주식은 공개 유통 또는 거래될 수 없음

## □ 공적 유한책임회사 (akcine bendrove-AB)

- AB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외국 투자 방법
- AB의 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음
- AB 및 UAB의 주주들은 주식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회사에 대해 법적 책임
- UAB 및 AB의 법인 설립 및 운영은 리투아니아 민법 및 특수 회사법의 규제를 받음



## □ 법인설립요건

- 사적 유한책임회사는 개인 또는 법인(현지 또는/및 외국) 등 하나 이상의 개인에 의해서 설립
- 설립자는 설립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설립 행위를 이행(단독 설립자의 경우)
- 설립자는 회사의 정관을 승인, 법인 등기부에 제출되어야 할 표준 신청서를 작성(리투아니아 공증인의 적절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후 법인등기부에 등재)
- 사적 유한책임회사(개인기업 포함)가 한 명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증 확인 없이 필요한 모든 문서는 법인 등기부에 전자 제출가능
- 외국 법인(설립자)은 또한 등록 증명서, 회사 정관, 및 리투아니아에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결정서를 전달해야 함  
(외국의 관할 당국에 의해서 공인)
- 회사 등록에는 필요한 문서가 적절히 작성되고 법인 등기부에 제출 및 인지세의 납부 이후 영업일 3일이 소요
- UAB의 주주는 적어도 한 명 내지 250명 미만, AB의 주주의 수에는 제한이 없음

## □ 법인자본

- 최소 수권(주식) 자본금(authorized (share) capital)은 UAB의 경우 10000 LTL (약 2900 유로)이고, AB의 경우 150000 LTL(약 43500 유로)
- 수권(주식) 자본금의 4분의 1은 반드시 현금출자
  - 금전적 분담금은 UAB의 경우 최소 금액인 2500 LTL 이상  
AB의 경우 37500 LTL 이상
- 나머지 분담금은 금전적 분담금이거나 현물 출자가능  
(현물 출자의 가치는 회사의 등기 이전에 공증 받은 자산 평가사의 평가)

- 주식 자본은 주주총회의 의결권의 적어도 3분의 2의 결정에 의해서 증액되거나 감액가능하고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지출하기 위한 목적의 수권(주식) 자본의 축소는 연례 주주총회에서만 결정될 수 있음
- 회사의 순자산(equity)은 수권(주식) 자본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3 경영

#### □ 조직

- 리투아니아 회사법은 주주 총회, 이사회 및 감사회로 구성되는 3자(three-tier) 경영 구조의 형성을 요구
- 법률에 따르면, 사적 및 공적 유한책임회사 모두 의무적으로 두 개의 경영체(주주총회 및 회사의 대표)를 구비
- 이사회 및 감사회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선택적
- 보험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의무사항인 반면, 은행은 감사회 및 이사회 모두를 구비
- NASDAQ OMX Vilnius 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기업 지배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회사의 경우 감사회 및 이사회를 가지는 것이 권장
- 경영진의 구성원의 주거에 관하여는 요구되는 것이 없음

#### □ 주주총회

- 주주총회는 정관의 수정, 주식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연례 재무제표의 승인, 정리(liquidation), 구조조정 등의 사안을 결정하는 독점적인 권한이 있는 최고 기관
- 주주총회의 결정은 출석 투표수의 단순 과반수(즉, 50퍼센트 더하기 1표)에 의해서 내려지며, 이때 주식자본의 증가/감소, 자본 계정의 승인

및 수익 배당 등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of votes)의 최소 3분의 2, 또는 4분의3 또는 그 이상에 의해서 내려져야 할 주요 중요 결정은 예외

□ 대표

- 회사는 회사의 대표에 의해서 경영되고 대리(경영 이사, 대표, CEO, 등) 고용 계약은 회사의 대표와 체결

**4 지사 및 연락사무소**

□ 외국 회사의 지사

- 외국 회사의 지사는 회사의 구조 단위로서 고유의 등록 사무실을 가지며 독립체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 지사는 독립체의 지위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법인 등기부에 등기
- 외국 회사는 지사의 의무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지사는 사업 활동을 수행 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외국 회사가 허용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의무수행)
- 지사를 대리하는 개인들 중 최소 한 명(예를 들어 지사 관리자)은 리투아니아에 거주

□ 지사와 P.E

- 외국 독립체의 활동의 하나의 형태로서 지사는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으로서 취급되어야 하므로 리투아니아에서 기업 소득세 목적을 위해 등기
- 은행업 및 보험업 사업 역시 리투아니아의 개설 지점을 통해서 수행
- 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 보험회사는 고국에서 발행된 허가증 및 외국 국가들이 리투아니아에서 사업을 수행해도 좋다는 관련 당국의 허가 필요

## □ 연락(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외국 회사는 대리 및 관측 목적으로 대표 사무소를 설립
- 대표 사무소는 제한적인 영업 활동만을 수행
- 대표 사무소가 수행한 활동들이 국내사업장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활동은 리투아니아에서 기업 소득세 부과대상

## 5

## 합병 및 분할 (국제합병)

### □ 합병(Mergers)

- 법인은 민법상 합병 및 분할에 의해서 재조직될 수 있으며, 회사법상 AB 및 UAB의 구조조정에 관한 의무 요건을 규정

### □ 합병방식

합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짐

- 하나(이상)의 기존 기업은 다른 기존 기업에 합병(결합)되어 하나의 회사의 모든 권한 및 의무는 다른 회사로 이전되고, 존재가 중단되는 회사는 청산 절차 없이 법인 등기부에서 등록 취소
- 둘(이상)의 기존 기업은 새로운 법인체에 합병(통합)되어 합병에 참가한 회사들의 모든 권한 및 의무는 위 신규 설립된 회사로 이전되고 기존 회사들은 청산 절차 없이 법인 등기부에서 등록 취소(이러한 합병 형태는 신규 회사의 설립을 포함)

### □ 분할방식

- 하나(이상)의 기존 회사는 분할되어 위 회사의 모든 권한 및 의무는 두 개 이상의 기존 회사들로 이전되고 존재가 중단되는 회사는 법인 등기부에서 등록 취소

- 하나의 기존 회사는 둘 이상의 신규 회사로 분할되어 위 회사의 모든 권한 및 의무는 신규 설립 법인체들에 이전되고 기존 회사는 현금화 절차 없이 법인 등기부에서 등록 취소되고 이러한 합병 형태는 신규 회사의 형성을 포함

#### □ 기타 구조조정관련 절차

- 규정 자본금이 전액 지불된 이후에만 구조조정에 참여
- 합병 결정은 준비된 합병 조건의 공개 발표 이후 최소 30일 이후에, 총회에 의해서 채택
- 합병되는 회사들은 합병 조건을 최소 30일 간격으로 세 번 공개하거나 한 번 공개하고 모든, 회사의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공지
- 합병되는 회사들의 자산, 권한 및 의무는 합병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의 주주총회가 승인한 합병 조건에 따라서 배정

#### □ 국제 합병(Cross-border mergers)

- 국제 합병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 합병에 참여하는 각 회사는 국가 합병 시 적용되는 국가법의 규정 및 절차를 따름
- 동일법인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만이 국제 합병에 참여가능
- 통상적인 초안 요건은 국제 합병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에 대하여 작성

## 6

## 주식공개 및 기타

### □ 주식공개

- 공적 유한책임회사(AB)만 가능
- NASDAQ OMX Vilnius(예전의 Vilnius 주식 거래소)는 리투아니아의 규제 시장의 단독 운영
- 거래 리스트에 수용(admission)되어야 할 금융 상품들은 이전(transfer)됨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야 하며, 자유롭게 협상 가능해야 하고,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고 전액 지불되어 함
- 금융 상품들의 계획서는 승인 및 공개
- 주식 거래소 규정은 EU 규정의 조항에 기초

### □ 파산소송

- 채권자와의 조정에 실패하고(예를 들어, 부채를 갚지 않거나, 선불 받은 작업의 불이행 등), 지체된 의무/부채가 대차대조표에 기록된 회사의 자산가치의 반을 초과하는 경우 그 회사는 파산한 것으로 간주
- 회사의 파산 절차는 채권자, 회사의 소유자 또는 경영진에 의해 개시
  -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파산 소송은 법적 소송(일반적으로) 및 비법정 절차(재판권 밖의) 소송으로 실시

### □ 파산소송신청

- 다음 중 최소 한 가지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신청
  - 회사가 보수 및 기타 고용 관련 금액을 기한 안에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 회사가 수신한 물품, 이행한 작업, 개시된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거나,
  - 대출금의 상환을 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회사가 세금 또는 법이 규정한 의무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 불능 또는 의무를 공제할 의도의 결여를 공개 선언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공지한 경우
- 회사가 부채를 청산할 자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그에 따라 법원 파산 관리인이 이행 영장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을 경우

◆ 진출시 유의사항 ◆

리투아니아 민법은 고의적으로 회사를 잘못 경영하여 파산을 초래하고 채권자에게 주요 심각한 손해를 입히게 한 자의 형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개인은 최고 3년의 징역





# 제 3 부 라트비아

(Republic of Latvia)





# 제 1 장 라트비아 국가개황

1. 국가개요
2. 정치 · 경제동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1 국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발트해 동부</li> <li>◆ 수도 : 리가</li> <li>◆ 인구('11년) : 2.2백만</li> <li>◆ 종교 : 루터파신교(19.6%)</li> <li>◆ 언어 : 라트비아어(공용어)</li> <li>◆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li> <li>◆ 국가원수</li> <li>- Andris Berzins 대통령 (Valdis Dombrovskis 총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교 : '91.10.22.</li> <li>◆ 대외정책 : 친서방</li> <li>◆ 면적 : 65천km<sup>2</sup>(한반도의 2/7)</li> <li>◆ 통화단위 : Lat(LVL)</li> <li>◆ GDP('11) : 280억달러</li> <li>◆ 1인당 GDP( ) : 12,580달러</li> <li>◆ 환율(US\$1당) : 0.5('11 연중)</li> <li>◆ 주요자원 : 이탄, 석회암, 백운암 등</li> </ul>
--	---

# 2 정치 · 경제 동향

## □ 신생 독립국가

- '91년 독립선언 이전에 舊 소련의 통치를 받으면서 대대적인 인구변화를 겪음
  - 라트비아인 강제추방과 슬라브계 노동자의 이주로 75%에 달하던 라트비아인 비율이 60% 이하로 하락
- NATO에 '04년에 가입하였으며 '04년 EU가입 회원국이 되었음

## □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 농공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독립이후 러시아 공급 원자재의 상승으로 산업 불균형을 가져오면서 농공분야는 축소되고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업이 급격히 팽창
- '04년 EU가입 후 연간 10%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다 유럽경제위기로 다소 주춤하나 경제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하는 강소국으로 언론에 보도됨

## □ 경제 동향

경제성장률 및 주요경제지표

(단위 : %, U\$/인)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망
경제성장률(%)	-3.3	-17.7	-0.3	5.5	2.2
1인당 GDP(달러)	14,819	11,434	10,703	12,580	12,530
소비자물가상승률(%)	15.4	3.5	-1.1	4.4	3.3
총 외채잔액/GDP(%)	124.3	156.4	165.7	146.4	138.1
단기외채/총 외채(%)	34.6	25.5	32.3	33.2	33.9

출처 : 2012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 3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주요 교역 현황

- 외교관계 수립 : '91. 10. 22.
- 주요 협정 체결 현황 : 투자보장협정('96), 사증면제협정('03), 이중과세방지협정('09),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문화, 교육, 청소년, 체육분야 협력협정('11)
- '11년 전년대비 수출 152% 증가

### 對 라트비아 수출현황

(단위: 천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금 액	93,360	139,059	76,505	90,851	228,942
증 가 율	-2.5	49.0	-45.0	18.8	152.0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제 2 장 라트비아 조세제도

1. 법인소득세
2. 특별경제구역 세금혜택
3. 이전가격세제
4. 원천징수
5. 부가가치세
6. 기타 주요조세
7. 개인소득세

# 1

## 법인소득세

### □ 일반적인 원칙

- '95년 2월 제정된 『조세에 관한 법령(On Tax and Duties)』에 일반적인 조세원리를 규정
  - 조세 법률의 적용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최우선 원칙은 해당 사안이 특별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 특별 법률(예, 부가가치세, 법인 소득세)이 “조세 행정”에 관한 일반 법률보다 우선 적용함

### □ 세법상거주자

- 세금 목적의 회사의 거주를 규정하는 기준은 법인설립 또는 국내사업장의 경우처럼, 라트비아에서 법률 상 세금 납부자로서 등록되었는지 여부임

◆ 우리나라 거주자판정과의 차이 ◆

거주지 판단의 효력발생장소(effective place of management of residence)가 없음

### □ 법인소득세

- 세율 : 15%
  - 특별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특수경제구역으로 등록된 회사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세액 공제를 기존 세율인 25퍼센트에 기초해서 산출
- 과세신고 및 세무검증
  - 자진신고 세제(self-assessment tax system)
  - 납세자는 먼저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세무당국은 신고 내역을 해당 연도의 소득신고 제출 최종 기한 이후 3년 내에 확인 조사할 수 있음
- 과세표준
  - 내국법인 : 전 세계적 차원의 소득 및 자본이득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사)은 별도의 라트비아 세금 납부자로 취급
- 비거주자 회사의 라트비아 지사의 수익은 거주자 회사의 수익과 동일한 비율의 표준 기준에 따라 과세

◆ 진출시 유의사항 ◆

이자, 운영비, 등 지사와 본사 간의 내부 경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사업장의 활동에 기인되는 경비는 공제가능)

- (tonage tax) 라트비아에 등록된, 국제적으로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는 운영에 사용하는 개별 선박의 적재량에 따른 기업 소득세 납부를 선택 가능
  - ※ 선택안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유지
- 기업간 배당에 대한 과세(Inter-company dividends)
  - 소유관계 수준과 무관하게 라트비아 기업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세금에서 제외단, 일정 세금혜택을 받는 라트비아 기업이 지불하는 배당금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배당금은 지불한 기업 받는 세금혜택의 비율에 따라 계산
  - 비거주 회사들로부터의 배당은 과세대상임
    - ※ EU나 EEA 국가들 내에 등록된 회사들로부터 배당은 제외
- 증여 및 기부비용(Gift and donation costs)
  - 거주 회사는 개인들과 비거주자들, 비영리 단체 및 거주 회사들에 대해 이루어진 증여 및 기부에 대한 법인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단, 재무부에 등록된 공익 단체들에 대해 이루어진 기부 액수의 85%에 대한 세금공제 가능
- 부가급부(Fringe benefits)
  - 관리 및 이사회의 구성원들, 회사와 다른 계약 관계를 맺은 고용주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회를 판매해 왔던 피고용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수당은 부가 급부로서 과세

- 예비충당금(Reserves and provisions)
  - 특별한 상황에 있는 은행과 보험회사 외에, 예비충당금은 차감하지 않음
- 세무결손금
  - 세무상 결손금을 8년까지 이월하는 것이 가능
  - 소급공제는 불가능
  - 특수 경제 지역에 등록된 세금 납부자들은 10년의 이월가능

◆ 진출시 유의사항 ◆

기업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때,  
기업이 지난 2년간 주로 수행했던 핵심 경제활동을 향후 5년간 지속하지 않는 한 기존 세무결손금에 대한 권리는 상실

- 자본이득, 양도소득(Capital gains)
  - 자본 이득은 별도로 과세되지 않고 기업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 안에 포함
- 그룹회사
  - 모회사 및, 90%의 공동 소유권을 가진 자회사(들)은 한 그룹으로 취급
  - 회사들은 라트비아, 다른 EU 국가 또는 EEA 국가 거주자들이거나, 라트비아가 이중 과세 조약을 맺은 나라의 거주자들이어야 함
  - 과세 목적의 금융 통합은 없더라도, 그룹의 통합 재무제표가 요청
  - 결손금은 EU 및 EEA 국가 거주자들을 포함하여, 라트비아 거주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소정 상황들 하에서 양도가능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s)
  - 회사의 과세대상 소득으로부터 이자비용은 공제됨
  - 공제가능 이자비용 제한
    - 단, 이자가 라트비아 거주자나 EU 등록 신용 회사에 지불된 경우 차감 가능 제한이 없음



- 라트비아가 이중 과세 조약을 맺은 나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지불금에 대해서도 적용
- 공제가능 이자비용계산은 연단위로 계산됨
- 비공제 이자 지불금은 추후 과세 년도 중에 공제를 위해 이월불가
- 과세대상 소득은 사내유보(retained earnings)의 결과로서 지분이 증가된 액수의 조건부 대출에 대해 지불가능한 조건부 대출 이자에 대하여 감액될 수 있음

**[과소자본세제 산출방법]**  
아래 두가지 방법 중 높은 금액 적용

☞ 제1산출법  
연중 이자가 지불된 원금 \* 라트비아 통계청에서 정한 과세연도 마지막 달 평균단기 이자율의 1.2배  
⇒ 초과분은 공제불가

☞ 제2산출법  
평균 대출잔액의 평균금액이 연초 회계보고서에 기술된 자본금의 4배를 초과하는 액수 까지 비례하여 부인됨  
단, 장기투자재평가 예비비 등 일정금액부분은 감액가능  
⇒ 초과분은 공제불가

○ 감가상각

- 고정 자산에 대한 조세 감가상각은 이중체감법을 사용하여 산정
- 이중체감 효율 : 15% ~ 60%  
예시) 석유추출 탱크 : 15%, 기술 장비, 기계 : 20%; 사무 장비 : 70%
- 장비 구매 시 과세기간에 새로운 기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산정하기 전에 가액은 아래 언급한 계수까지 증가(새로운 자산)
- '08년과 '13년 사이에 취득한 새로운 기술 장치에 대한 세금 감가상각은 자산 가치를 1.5의 증가율로 곱하여 계산

※ 감가상각계수

연도	계수
2008	1.3
2009	1.5
2010	1.5
2011	1.5
2012	1.5
2013	1.5

☞ 시사점 : 고정자산의 투자에 대한 유인책으로 신규자산 가액의 1.5배까지 총 상각비용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

- 라이선스 및 상표의 인수 비용은 5년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  
(관련 이권은 10년의 기간 동안 상각)
-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발행된 출원, 라이선스 및 상표는, 조세 목적으로 해당 유효기간 이내에 충당
- 연구개발 비용은 비용 발생 연도와 동일한 연도에 조세 목적으로
- 감가상각은 영업비밀 및 영업권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음

◆ 진출시 유의사항 ◆

'09년 자산투자에 대한 감면신설  
기존 자산의 양도 이전이나 1년 이내에 기능상 유사한 자산을 획득한 경우, 해당 자산양도 소득은 감면  
(예술 작품, 골동품, 보석, 차량, 해안 차량, 항공기, 오토바이에는 적용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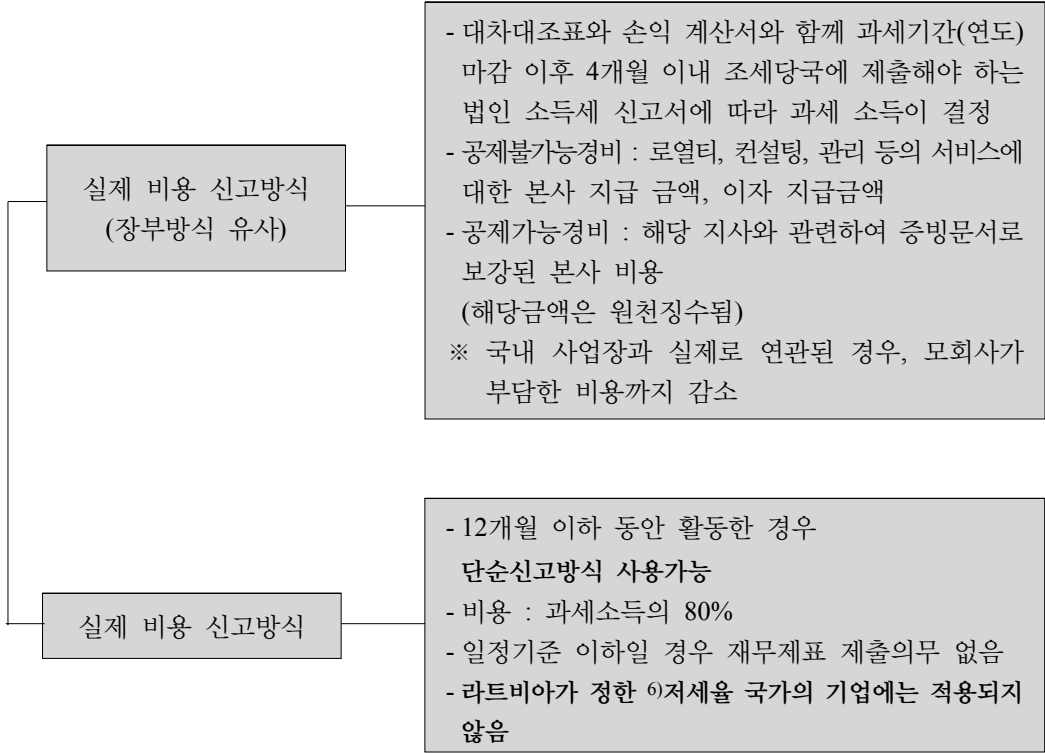
○ 소기업 과세('11년 도입)

- 소기업은 사업 활동으로부터의 매출에 대해 9%의 세금
- Eur 100,000 이하 & 종업원 5인 이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진출시 참고】

단일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라트비아는 소액창업지원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저세율 과세를 신설하였음  
이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누진세도입의도보다는, 단일세율 성공의 전제조건인 과세기반의 확충을 위한 포석으로 판단됨

○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 과세



○ 세금 징수

- 과세 기간은 회계연도와 동일하며, 역년과 상이할 수 있음  
연간 세금 환급은 관련된 과세 기간 말일로부터 4월까지 신청
- 대규모 기업은 이 기한을 일곱 달까지 연장가능
- 매달 세금 선 납입

6) 과세목적에 따라 라트비아에서 채택한 저세율 국가 : 홍콩 외

## 2 특별경제구역 세금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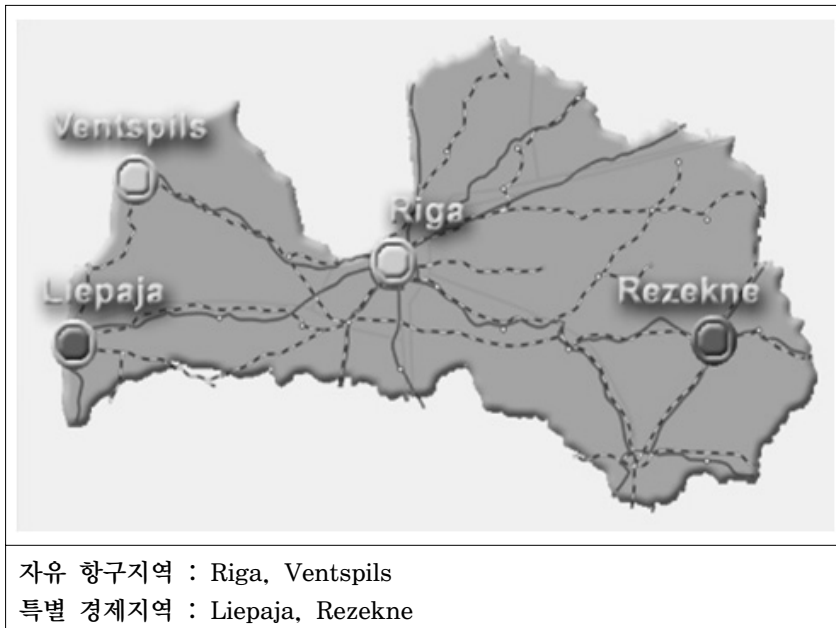
### □ 근거법령

- '01년 채택된 “자유 항구 및 특별 경제 구역에서의 조세 적용”에 관한 법률

### □ 특별경제구역 혜택요건

- 특별경제구역, 자유 항구 당국이 발행하는 허가서
  - 특별경제구역, 자유 항구지역에 위치하고 해당지역에서만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만 발행
- 특별 경제 구역이나 자유 항구 지역 외부에서의 계약 체결, 특별 경제 구역이나 자유 항구 지역으로부터의 상품 운송, 그리고 기타 상품 및 금액 거래 수행의 성격이 없는 활동은 예외인정

### □ 라트비아 투자지도(Special economic Zones)



【출처 : 리투아니아 투자청】

### □ 특별경제구역 혜택

- 부동산 세금에 대한 80~100% 감면
- 해당 구역 내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세의 80퍼센트 감면
- 배당금, 관리 비용, 그리고 지적 재산 사용 지급 금액에 대한 원천과세의 80퍼센트 감면
- 자유 구역 내에서 공급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0퍼센트 VAT
- 외국으로부터의 자유 구역 수입과 해외 자유 구역으로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관세 감면
- 본국에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외국인은, 현재 매년 최소 15개월 봉급의 고정 금액에 대한 사회보험을 납부가능

## 3

### 이전가격세제

#### □ 이전가격세제 근거 규정

- '95.4.1 이전가격 과세지침 제정(CIT 법률)
- '06년 거래순이익율법규정,
- '09년 재무부 규정을 통해 정상가격산정방법공표
- OECD가이드라인을 따름

#### □ 최근 이전가격세제 조사

- 관련 판례 및 특별한 논쟁점 없음
- TP도입 초기 상황으로 이전가격과세논점이 발생하기 전임

#### ◆ 진출시 유의사항 ◆

최근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가 필수적인 진출기업의 주의가 요망됨

- Global Transfer Pricing Review, KPMG, 2012 -

특수관계규정

- 지분, 의결권 20%이상을 보유하고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APA

- '11년 지역의회 APA논의가 이루어져 '12년 말 또는 '13년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나 불투명

문서제출

- 과세당국의 요청 후 30일 안에 제출(라트비아어)

**4 원천징수**

과세대상 & 세율

- 배당: 10%, EU 및 EEA 거주 주주들은 예외
- 관리 및 자문료: 10%
- 관련인에 대한 이자: 5~10%
- 임대비용: 5%
- 문학 및 예술 작품 관련 지식 재산권 사용 권리: 15%  
(수취인이 다른 EU 국가의 거주자이고 로열티를 지불하는 회사의 25% 초과분을 소유하는 경우 5%의 세금이 적용)
- 다른 지적 재산권 사용 권리: 5%
- 라트비아 내 고정 또는 유동 재산 사용에 대한 비용: 5%
- 라트비아에 위치한 부동산의 판매에 대한 비용: 총 수익금의 2%

◆ 진출시 유의사항 ◆

우리나라는 중국진출의 편리함과 역외소득에 대한 면제혜택으로 홍콩에 해외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일이 많음. 라트비아 진출시 홍콩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는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으로 주의

○ 저세율 국가 : 15%

Antilles(Netherlands), Andorra, Anguilla, Antigua & Barbud,Aruba(The Netherlands), Bahamas, Bahrain, Barbados, Belize, Bermuda, British VirginIslands, Brunei Darussalam, Cayman Islands, Cook Islands(New Zealand),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Gibraltar, Grenada, Guam, Guatemala, Guernsey, HongKong(Sjangana), Isle of Man, Jamaica, Jersey, Jordan, Jisbuty, Kampione, Kenya, Kuwait, Labuana(Malaysia), Lebanon, Liechtenstein, Liberia, Maldives, Macao, Madeiraa(Portugal), Mauritius, Marshall Islands, Monaco, Montserrat, Nauru, New Caledonia, Niue(NewZealand), Olderne, Panama, Qatar, San Marino, Seychelles, St. Helens, St. Kitts and Nevis, St. Maria Island(Portugal), St. Pierre and Michel(France), Samoa, Santome and Prinsipi, Republic, St. Lucia, St. Vincent and Grenada, Tahiti(French Polynesia), Tonga, Turks and Caicos Islands, United Arab Emirates, Uruguay East Republic, Vanuatu, Venezuela, Virgin Islands(USA), Zanzibar Island(Tanzania)

**5 부가가치세**

근거법령

○ VAT 체계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

납세의무자

- 라트비아 안에서 과세 가능 거래를 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 과세가능 거래는 라트비아 내에서의 재화나 서비스 공급, 자체 소비, 재화 수입 및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 12개월의 기간 동안 LVL 35,000을 초과하는 과세 가능 거래는 VAT 납세자로서 등록

☞ 부가가치세사업자 등록의무 ☞

- 12개월의 기간 동안 LVL 35,000을 초과하는 과세 가능 거래는 VAT 납세자로서 등록
- 금액에 상관없이, 수취인이 부가가치세 등록인이 아니고 행사된 상품이 라트비아에서 공급될 예정이거나 상품이 라트비아에서 설치될 예정인 경우
- 제공된 서비스가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스포츠나 부동산에 관련된 경우(금액에 상관없음)
- 임대 서비스를 제외하고, 제공된 서비스가 상품의 입고, 운송과 관련되거나 부동산(예, 수리, 평가, 유지)과 관련된 경우

## □ VAT 세율

### ◆ '12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

표준세율 인하 22% ⇒ 21% (적용 : '12.7.1일 부터)

'08년 18% ⇒ '09년 21% ⇒ '11년 22%

연도에 따른 세율 변경 유의

- 표준 VAT 세율은 21%
- 저율 VAT 세율 12%
  - 명시된 약품, 의료용 물품 및 장비의 공급
  - 명시된 유아용품의 공급
  - 매스미디어 제품의 공급(인쇄 매체에 대해서만 '12년부터 표준 세율)
  - 라트비아 내 공공 수송 서비스
  - 거주자들에 대한 난방 공급
  - 자동차의 천연 가스 사용을 제외한 거주자들에 대한 가스 공급
- 영세율(0%)
  - 재화의 수출 및 역내(intra community) 공급
  - 재화를 수출, 수입 및 수송하는 운임
  -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거나 자유무역지대나 세관 보세 창고 안에 납부된 EU 안의 무료 유통을 위해 발매된 것이 아닌 재화와 직접 관련된 서비스
  - 국제 수송 및 구조선과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 국제 승객 운송
  - 외교 및 영사 협정 하의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 면세
  - 주식 및 증권 거래
  - 금고 및 현금화 이용료를 제외한 बैं킹 및 금융 서비스
  - 보험 거래



- 복지 및 사회 보장 업무 관련 서비스
- 의료보험 제공
- 교육 서비스
- 신축건물의 최초 판매를 제외한 부동산 판매
- 개인에 대한 자국 내 아파트 임대
- 내기, 복권 및 다른 형태의 도박

○ 부가가치세 환급

- EU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되고 라트비아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라트비아에서 구매한 상품이나 수취한 서비스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가능
- 라트비아에서 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회사가 제3국으로부터 라트비아에서 구매한 상품이나 수취한 서비스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환급
- 부가가치세 상환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청구서(원본), 납입 서류, 그리고 회사가 다른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된 사실에 대한 적합한 조세 당국의 진술서
- 라트비아에서 구매하고 EU 외부에서 반입한 LVL 25 이상 가액의 상품에 대해 개인이 제3국으로부터 납입한 부가가치세는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에 의해서만 환급가능

○ 환급 제한

- 면세 공급 : VAT가 과세 가능한 공급 및 면세 공급 둘 모두와 관련될 때 과세부분만을 안분해야함
- 비영업(개인 포함) 활동: VAT가 영업 및 비영업 활동 모두와 관련될 때 영업부분만을 안분해야함
- 피고용자에 대한 식사나 숙박 제공과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의 지불 및 오락 사업 (단, 출장 중의 숙박에 대한 VAT는 환불가능)
- 대표적 자연에 대한 지출 VAT의 60%

- 습득, 임차된 승객용 차량 및 관련 지출에 대해 지불된 매입 세금으로 부터 20%
- 매입 VAT는 면세 거래들에 대해 청구될 수 없고, 매입 VAT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 발생과 직접 관련된 거래들에 대해서만 청구가능

## 6 기타 주요조세

### 소비세(물품세)

#### ○ 과세대상 및 세율

소프트 드링크 : 100 리터당 LVL 4
커피 : 100 킬로그램당 LVL 100
맥주 : 100 리터당 LVL 4
와인 및 기타 양조 드링크 : 100 리터당 LVL 40
15도 이하 알코올 음료 : 100 리터당 LVL 42
15- 22도 사이의 알코올 음료 : 100 리터당 LVL70
기타 증류수 및 알코올 음료 : 100 리터당 LVL 825
담배 : 1000 개피당 LVL 22.5 소매 가격의 34.5%
토바코 : 1000 그램당 LVL 14-23
휘발유, 디젤유 : 1000 리터당 LVL 234-300
기름 가스 : 1000 리터당 LVL 90
난방 사용 제품 : 1000 리터당 LVL 11

### 부동산세, 토지세

#### ○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금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법적 지배 권을 가진 개인 및 법인



- 일반 세율 : 지적측량 가치의 1.5%
  - 전년도 가액의 최대 25% 이상 증가제한
- 영업활동에 공하지 않는 개인 주택 세율
  - LVL 40,000을 초과하지 않는 지적측량 가치로부터 0.2%
  - LVL 40,000에서 LVL 75,000의 지적측량 가치로부터 0.4%
  - LVL 75,000을 초과하는 지적측량 가치로부터 0.6%

#### □ 토지세

- 과세대상 : 개인 토지의 소유자들에 의해 납부  
산림, 공용 도로, 대사관 부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세율 : 1.5%
- 납부기한 : 상반기 중에 취득되었으면 토지세는 초년부터 발생  
하반기 중에 취득된 경우, 토지세 이듬해에 발생

#### □ 포장세

- 과세대상 : 모든 포장단위
- 세율

유리 : LVL 0.20/kg  
펄프와 기타 자연섬유 원자재 : LVL 0.15/kg  
중합체 : LVL 0.60/kg  
금속 : LVL 0.45/kg  
종이, 모니터 : LVL 1.05/kg  
휴대폰 : LVL 1.5/kg  
냉장고 : LVL 0.65-1.05/kg

#### □ 천연자원세

- 인가된 양을 초과하여 추출된 천연자원
- 정해진 한계를 초과하는 환경오염, 환경에 해로운 재화

- 수입 및 국내 생산 재화의 포장

## □ 복권 및 도박세

- 1994년 채택된 “도박 및 복권 세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박 및 복권 세금은 도박 라이선스를 획득한 비즈니스 단체에 부과
- 연간 라이선스 비용은 토틸라이제이터 도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LVL 25,000 또는 LVL 300,000이다.
- 도박 세금은 각각의 도박 시설이나 도박 기계에 대해 매년 납부 (각각의 룰렛 테이블은 LVL 9,600, 각각의 토틸라이제이터는 LVL 30,000, 각각의 슬롯머신은 LVL ,1680, 각각의 100 좌석까지의 빙고는 LVL 12,000의 도박 세금을 과세)
- 8% 효율의 복권 세금은 복권 티켓 판매 수익금에 대해 부과한
- 즉석 복권 티켓의 판매 수익금은 10% 세금으로 과세됨

## □ 사회부담금

- '98년에 최초 통과된 “국가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은 고용자들이 수취한 급여에 대한 의무 법정 사회보험 부담금의 적용에 대해 규정
- 사회보험 부담금은 부담자에게 일반 질병, 연금, 출산 및 기타 사회적 혜택의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보험 예산에 지급
- 부과대상 : 거주자 고용주, 라트비아 회사의 고용인, 비거주자가 고용한 거주자 고용인, 라트비아 업무에 배치된 거주자 외국인, 자영업자
- 세율
  - 고용주는 총소득의 24.09% 효율로 매월 사회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총 부담 세금은 33.09%이며, 고용자는 9%를 부담)
  - 비거주 고용주가 고용한 외국인은 31.13%
  - 자영업 효율은 30.48%

## 7 개인소득세

### □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 라트비아 영주권
- 12개월의 기간 동안 183일 넘게 라트비아에 거주할 때
- 라트비아 정부에 의해 해외에서 고용된 라트비아 시민일 경우
- 「the law tax and duies」의 규정에 의하면 라트비아의 거주를 중단시키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음 해 개인이 국외에 더 많이 귀속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음

☞ 거주자 판정기준일

- 1) 과세납부 연도의 직전 연도에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은 개인은, 과세연도에 라트비아에 입국한 날로부터 거주자로 간주
- 2) 과세연도 이후의 기간에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은 개인은, 라트비아 출국일 이후 과세연도의 기간 동안 거주자였다고 간주하지 않음  
 다만, 이 기간 동안 개인은 라트비아 이외의 다른 국가와 보다 7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함
- 3) 거주일수 포함 : 부분 존재 일수 (24시간 이내), 출입국 일수,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연차휴가 일수, 그리고 관련 질병으로 관련자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 이외의 질병 일수
- 4) 거주일수 미포함 : 라트비아 외부의 2개 지역 사이의 여행기간 동안 중도 24시간 이내의 기간

### □ 납세의무자 : 거주 및 비거주 개인

#### □ 과세소득

- 거주 납세자들은 전세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상이고 다음과 같음
  - 봉급

7) 해당 국가의 재산 소유권,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제도에 분담액, 또는 관련 외국인의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

- 외국 및/또는 국내 국가 세금 상환금
  - 학교 수업료의 상환금
  - 가족 휴가(home leave) 상환금
  - 생활비용
  - 국외이주 프리미엄
  - 주거 급여(housing allowances)/상환금
  - 회사 차량
  - 고용주가 지불하는 의료보험 프리미엄
  - 인센티브 보상
- 비거주 납세자들은 라트비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상
- 라트비아 또는 외국 고용주를 위해 라트비아 내에서 수행되거나, 라트비아 고용주를 위해 라트비아 밖에서 수행되는 직무에 대한 고용 소득
  - 라트비아 거주자들이나 라트비아 안팎에 등록된 고정 사업장에 대해 제공되는 독자적 전문 서비스로부터의 소득
  - 라트비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스포츠인, 또는 트레이너와 같이 전문 서비스를 통한 소득
  - 라트비아 회사의 이사회나 감독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서 발생한 소득
  - 라트비아에 등록된 파트너 관계로부터 발생한 소득
  - 지불가능 배당금을 초과한 라트비아 회사의 파산으로부터 나온 정리 수익금 형태의 소득
  - 라트비아에 위치한 부동산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나온 소득
  - 라트비아 내 부동산 임대로부터 나온 소득
  - 개인 농장의 농업 생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
  - 배당금
  - 라트비아 신용 기관으로부터의 이자를 제외한 이자 소득
  - 지식 재산권(로열티)으로부터 나온 소득
  - 계약이 고용주에 의해 맺어진 상태에서 특정 기간 이전에 그 계약이



파기된 경우의 보험료 지불

- 라트비아 입법체계에 따라 지불된 연금

## □ 세율

- 표준세율 : 25%  
(연간 소득이 LVL 10,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정 세금을 납부선택)
- 10% 소득세 : 이자, 배당 소득, 개인연금펀드발생소득
- 15% 소득세 : 양도소득

## □ 비과세소득

- 라트비아 회사들 및 EU 국가들 및 EEA 국가들에 등록된 다른 회사들로부터의 배당금
- 라트비아의 EU 및 EEA 등록 신용 기관들로의 예금에서 발생된 소득
- 국채(라트비아, EU 및 EEU 국가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가증권)으로부터 나온 소득
- 위자료 지불
- 일정 유형의 장학금
- 개인 자산의 판매로부터 나온 소득(12개월 이상 보유 부동산)
- 대부분의 비과세는 비거주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음  
(다른 EU 또는 EEA 국가의 거주자가 라트비아 안에서 자신의 연소득의 75% 이상을 받을 경우 비과세 적용가능)

## □ 공제

- 의무적 사회 보장 부과금
- 직계 존속이나 비속에 대한 지원금
- 자선 기관에 대한 기부금
-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에 관한 비용

- 개인연금 납부금
- 과세기간 중 6개월 미만을 거주한 비거주자는 사회 보장 부담금과 같은 표준 공제가능

#### □ 외국납부세액 공제

- 외국 세금이 라트비아 내 과세소득에 포함된 경우
- 공제한도 : 라트비아 세금한도
- 세금이 납부되었다는 증명서가 필요함

#### □ 세금 징수

- 납세 년도는 역년, 연간소득세 신고서가 이듬해 4월 1일까지 제출
- 자산 별로 작성되고, 과세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조사가능
- 신고납부세액이 LVL100을 초과하면, 세 달 동안 균등 분할 납부가능
- 고용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급여 지불시 원천징수

#### □ 사회 보장 및 건강 보험 부과금

- 고용자가 EU나 EEU에 거주하는 경우
  - 고용소득의 11%를 고용주가 원천징수(피고용인부담)하며, 고용주들은 별도로 24.09%를 추가납부
- 고용자가 EU나 EEU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라트비아에서 일하는 라트비아 시민: 33.09%
  - 183일 넘게 라트비아에 거주하는 비 라트비아 시민: 32.22%
  - 12개월 미만 동안 라트비아에서 일할 외국인들은 사회 보장 부과금을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 안에서 납입할 경우 라트비아 사회 보장 부과 의무면제

#### □ 고용보험 : 매달 사회보장금 포함





## □ 세금계산 예시

- 한 자녀를 둔 기혼의 라트비아 거주자가 받는 고용 소득(월 LVL200)

1. 월간 총 급여(LVL 단위)	200
2. 사회보장부담금 11%	22
3. 월별 비납세한도(*1))	45
4. 부양금	70
5. 월별 과세소득	63
6. 개인소득세	15.75
월별 순소득	162.25

(별도)고용주 부담 사회부담금 : 48.18(24.09%)

(\*1)비납세한도 : 연간 540, 월간 45LVL

월별순소득 : 총급여-사회부담금-개인소득세

## 제 3 장 라트비아 투자환경

1. 정부지원제도
2. 라트비아 투자방법(설립)
3. 지사 및 연락사무소
4. 합병 및 분할(국제합병)
5. 주식공개 및 기타

# 1 정부지원제도(State Support programs)

## □ EU정책지원금의 활용

- 라트비아는 EU최근 가입국으로 '13년까지 약 4억 유로가 지원되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될 예정
- 정부지원제도는 '13년까지 등록하는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가 있음

번호	지원제도
1	협력본부의 기금 및 지원 (the foundation and support of the Center of Competence)
2	기술이전센터의 지원 (support for the Technology Transfer Center)
3	기술 지원 technology incubation
4	지역별 창원지원센터 business incubators in regions
5	신제품 등의 개발 development of new products, services and technologies
6	산업공단 지원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areas used in business
7	고용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education and re-qualification of employees
8	창업지원금 support for start-up capital
9	위기관리 자금지원 risk capital fund
10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 guarantee for credit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출처 : 라트비아 투자개발청】

## 2 라트비아 투자방법

### □ 투자유형

- 신규 라트비아 등록 법인 기업체를 설립
- 기존의 기업을 매입
  - 일반적인 방법으로 낮은 행정비용이 소요됨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부동산 자체를 매입하는 것보다 유리)
- 등록 및 절차
  - 상업 등기국에 10LVL납부
  - 유한책임회사들의 주주 기록은 상업 등기국에 공개
  - 주식회사의 주주 등록은 해당 기업의 이사회에서 기록(상장은 공개)
  - 기존 기업 또는 부동산의 획득시 투자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 실사

### □ 법인 기업체

- 라트비아 기업의 절대다수는 유한회사이며 외국투자역시 유한회사를 선호
- 외국인의 라트비아 기업의 소유권에 제약이 없음(EU법의 설립자유의 원칙 준용)

◆ 진출시 유의사항 ◆

라트비아 진출은 회사의 등록을 통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라트비아 내에서의 프랜차이즈의 허가 또는 유통계약 또는 대리점 계약 체결은 라트비아 내에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우리나라 기업의 라트비아 진출시 대리인, 유통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제도의 이용을 고려

### □ 유럽사회기업(the European Society : SE)

- 라트비아 상업 등기국에 유럽 사회(SE) 형식의 기업을 등록가능

- 해당 기업의 주소지를 한 EU 국가에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또는 리히텐슈타인 등도 포함하는 다른 EU 국가로 이전 가능

○ SE 설립방법(EU규정 제2157/2001)

- 각기 다른 국가로부터의 주식회사들의 합병을 통한 SE의 설립
- 각기 다른 국가로부터의 유한책임회사들과 주식회사들의 합병을 통한 SE의 설립
- 기업들과 기타 법인들은 계열사로서 SE를 설립가능
- 기존 주식회사가 다른 EU 국가에 계열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기존 주식회사를 SE로 재편성

□ 법인설립

○ 등록 : 상업등기국에 서류 제출 (외국 투자자 : 변호사나 기타 전문 고문)

-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는 매우 신속하게 설립
- 성립일 : 기업은 등록 담당자가 법인 설립 인증서를 발행한 날짜
- 등기와 동시에 과세당국에 납세자로 등록됨
  - ※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자 등록이 필요
- 신청기한 : 설립이사회로 부터 2주일 이내
- 상호에 관한 규정 : 엄격한 제약은 없고 단순한 지침을 따름  
(예: 기업명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이나 “라트비아 공화국,” 정부 기관 명칭 등의 일부 특정한 구절을 포함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심사 절차가 있으며, 법인 설립 신청 전에 이름에 대한 사전 승인가능)

○ 제출언어에 대한 특례

- 등기국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라트비아어로 제출  
(다른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 후 공증인에 의해 공증)
- '10년 11월 24일부로, 유럽 연합 및 스위스를 포함하는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에서 발행된 문서들은 라트비아에서 법적 인증제외

## □ 주식

- 법인 설립 서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최소 또는 최대 주식 수는 없음
- 라트비아 법에서는 “단일주주” 기업이 허용
- 주식회사는 기명/무기명 주식 및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회사는 기명주식만 발행할 수 있음
- 주식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발행  
(기업의 이익 잉여금으로부터 전입되어야 함)
  - 기업의 납입 주식자본의 10퍼센트 한도 / 양도, 상속불가

## □ 법인자본

- 유형별 자본

구분	최소자본
유한책임회사	2,000LVL
주식회사	25,000LVL
SE	120,000Euro
소규모자본 유한회사	1LVL

- 소자본 유한회사 요건
  - 최대 주주 수는 5명이며 오직 이 주주들만이 이사회의 임원이 될 수 있음
  - 각 주주들은 오직 하나의 소규모 자본 유한책임회사 소유가능

### 3 지사 및 연락사무소

#### □ 외국 기업 지사

- 라트비아 내의 외국 기업들의 지사들은 법적 인격은 없음  
단, 현지 기업들에 적용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납세자로 취급
- 비거주 기업의 라트비아 지사의 이익은, 일반적인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거주 기업의 이익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세율로 과세
- 과세된 지사 이익의 본사 송금에 대해 원천징수제의

◆ 진출시 유의사항 ◆

라트비아 현지법인의 배당금 송금에 대해 통상적으로 10퍼센트의 원천징수세가 부과함 따라서, 라트비아 신규시장 진출시 일단 지사진출을 통한 사업개시를 고려  
(Investment in the Baltic States, KPMG)

#### □ 연락(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외국 회사는 대리 및 판촉 목적으로 대표 사무소를 설립
- 대표 사무소는 제한적인 영업 활동만을 수행
- 대표 사무소가 수행한 활동들이 국내사업장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활동은 리투아니아에서 기업 소득세 부과대상

### 4 합병 및 분할(국제합병)

#### □ 합병(Mergers)

- 라트비아 내의 상업 법인은 제휴사이건 유한책임회사이건 주식회사이건 합병, 분할, 또는 재구성을 통해 조직구조변경가능

- 심사관 설정
  - 상업 등기국 사무소가 승인한 명단으로부터 관련된 기업간의 계약 초안을 심사할 심사관을 지정
  - 주식 교환율 및 자본 잉여금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를 보고
  - (심사관 설정 제외) 주주들이 모두 동의하거나 합병,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보유 할 때
- 공고 및 등록
  - 합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조직구조변경 계획서를 서면으로 준비
  - “Latvijas Vestnesis” 공보에 상기 조직구조변경에 대해 공고
  - 상기 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상업등기국에 신청서를 접수
- 소요기한 : 약 4개월 ~ 1년

## □ 국제합병(Cross-border mergers)

- 근거법령 : 합병에 대한 제 2005/56/EC호 지침을 시행
  - 다른 회원국가로부터의 기업들에 관한 설립의 자유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 개정상법은 라트비아에 등록된 유한책임회사들과 주식회사들의 국제 합병에 대한 규정들을 규정
- 주요절차
  - 채권자 및 종업원 보호절차
  - 총회에 의해 합병이 승인되기 전에 조직변경계획을 임원들 및 종업원들에게 공개(국제합병의 법적, 경제적 합리성을 포함)
- 소요기간 : 약 5개월 이상



## 5 주식공개 및 기타

### □ 주식공개

- 주식회사(JSC)만 가능
- 리가 증권거래소에 신청양식을 접수(라트비아 중앙은행동의)
- 금융 상품들의 계획서는 승인 및 공개
- 주식 거래소 규정은 EU 규정의 조항에 기초

### □ 파산소송(지급불능 소송)

- '10년 11월 1일 에 새로운 파산 관련법이 발효
  - 의회 규정 제 1346/2000호의 규정을 보완
- 신청자 : 채권자들, 해당 법인, 다른 회원국에서 시작된 지급불능 소송수속의 관리자 또는 법적 보호 수속의 관리자에 의해 법정에 제출
- 신청가능 부채최소액 : 3,000LVL
- 종업원들의 권리청구 : 8)종업원 권리청구 보장 자금에서 집행
- 우선순위
  - 1) 직접 소송수속 비용
  - 2) 세금, 선순위 채권자, 종업원들의 권리청구
  - 3) 기타잔액 : 각 채권자별 액수에 비례하여 상환
- 절차 종료 후 잔여자산이 있는 경우 영업지속 가능

8) 위험책임 부담금(annual risk duty payments)으로 유지



# 제 4 부 에스토니아

(Republic of Estonia)



# 제 1 장

## 에스토니아 국가개황

1. 국가개요
2. 정치 · 경제동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1 국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발트해 동부</li> <li>◆ 수도 : 탈린</li> <li>◆ 인구('11년) : 1.3백만</li> <li>◆ 종교 : 복음루터교(13.6%)</li> <li>◆ 언어 : 에스토니아어(공용어)</li> <li>◆ 정부형태 : 공화국정부(내각책임제)</li> <li>◆ 국가원수</li> <li>- Toomas Hendrik Iivis 대통령 (Andrus Ansip 총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교 : '91.10.17.</li> <li>◆ 대외정책 : 친서방</li> <li>◆ 면적 : 455천km<sup>2</sup>(한반도의 1/5)</li> <li>◆ 통화단위 : Euro(EUR)</li> <li>◆ GDP('11) : 222억달러</li> <li>◆ 1인당 GDP( ) : 16,583달러</li> <li>◆ 환율(US\$1당) : 0.72('11 연중)</li> <li>◆ 주요자원 : 오일셰일, 이탄, 인회암</li> </ul>
--	---

# 2 정치·경제 동향

## □ 유럽재정위기극복의 롤모델

-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 전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극복
- 전국민의 단결로 성공적 긴축정책
  - '11년말 GDP대비 부채율 6%(그리스 165%)
  - 경제성장률 7.6%(유로존 평균 5배 이상 높음)
- NATO에 '04년에 가입하였으며 '04년 EU가입 회원국이 되었음

## □ 유로존 가입

- 발트3국 중 최초로 '11년 1월 1일부터 유로존 가입
- 규제철폐·외자도입으로 급성장

## □ 경제 동향

경제성장률 및 주요경제지표

(단위 : %, U\$/인)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망
경제성장률(%)	-3.7	-14.3	2.3	7.6	2.2
1인당 GDP(달러)	17,811	14,343	14,138	16,583	16,637
소비자물가상승률(%)	10.4	-0.1	3.0	5.0	3.6
총 외채잔액/GDP(%)	116.1	128.4	116	11.4	117.1

출처 : 2012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 3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주요 교역 현황

- 외교관계 수립 : '91. 10. 17.
- 주요 협정 체결 현황 : 사증면제협정('01), 이중과세방지협정('10)
- '11년 전년대비 수출 63.7% 증가(급증추세)

### 對 에스토니아 수출현황

(단위: 천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금 액	96,491	112,335	41,512	62,801	102,785
증 가 율	49.9	16.4	-63.0	51.3	63.7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제 2 장 에스토니아 조세제도

1. 법인소득세
2. 이전가격세제
3. 원천징수
4. 부가가치세
5. 기타 주요조세
6. 개인소득세

# 1 법인소득세

## □ 세법상 거주자

- 법인은 에스토니아 법률에 따라 등록될 경우 에스토니아 거주자로 간주
  - 에스토니아에 등기된 유럽 공적 유한책임회사(SE) 및 유럽 조합(SCE)도 거주자에 해당

## □ 법인소득세

### ◆ 진출시 유의사항 ◆

기업 내부에 유보하는 기업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배당 시 과세

- 세율 : 21%
  - 회사가 벌어들이고 보유한 이익은 과세 대상
  -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회사는 기업소득세 납부의무 없음
    - ※ '15.1.1부터 20%적용(1% 인하)
- 과세대상 : 내외국기업의 차이가 없음(평등)
  - 거주자 기업, 주식회사, 외국 기업의 지사 및 국내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은 '00년 이후 동일  
 (지사 및 국내사업장은 에스토니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
- 과세표준
  - 통상적인 기업소득세제와 비교했을 때 개념상의 차이는 이익을 과세하는 대신, 이익의 분배(distribution of profits)를 과세
  - 이익의 분배의 범위



“분배”라는 용어는 직접적인 배당 지급보다 더 넓은 개념

- 1) 부가 급여, 선물, 기부, 및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 및 지불금 등 이익 할당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숨겨진 이익 분배 및 특정 비용을 포함
- 2) 주식 자본 또는 분담금의 축소에 따라 지급된 금액
- 3) 주식 또는 분담금의 상환 또는 반환 및 순자산(equity)에서 지불된 기타 금액 또는 청산 절차(liquidation proceeds)의 지급에 따른 금액

◆ 진출시 유의사항 ◆

기업소득세법은 '00년 이후 여러 번 개정  
따라서, 과세이윤의 발생연도 보다 그 이윤이 언제 배당되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보다 중요  
(15년부터 1% 세율인하 예정)

- 기업간 배당에 대한 과세(Inter-company dividends)
  - 지급 기준이 되는 이익의 금액 또는 주식이 과세 대상이고 에스토니아 회사의 자회사에서 최소 10퍼센트의 재산을 소유했을 경우, 배당에 대한 공제는 주식 자본 또는 분담금의 축소에 따라 받은 금액이나, 또는 주식 또는 분담금의 상환 또는 반환인 배당 뿐만 아니라 주식에서 지불된 금액 또는 청산 절차의 수령에 따른 금액이 기준이 되는 배당에도 적용
- 증여 및 기부비용(Gift and donation costs)
  - 거주자 회사는 자연인 및 비거주자, 정부가 승인한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영리 기업 및 거주자 사업에 대해 수여된 선물과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
  - 고객 및 사업 파트너 접대 시 발생한 비용에 관한 금액(숙박, 음식 조달, 운송, 및 문화비용) 역시 이 비용들이 지급 봉급 총액(payload)에 따른 상한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
- 부가급여(Fringe benefits)
  - 부가 급여는 고용주의 수준에서 21/79 비율의 소득세율 및 33퍼센트의 사회세 비율(소득세 금액은 사회세의 조건도 따른다)로 과세 대상

- 이사회 및 감사회의 구성원, 자영업자, 또는 기타 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 및 피고용인의 남편, 부모, 자식을 포함하여 피고용인에게 지급된 모든 급부금은 부가 급여로서 과세 대상
- 준비금 및 지급금
  - 세금효과 없이 적립가능
- 세무결손금
  - 세무상 결손은 과세에 영향 없음
- 자본이득, 양도소득(Capital gains)
  - 자본 이득은 별도로 과세되지 않지만, 분배에 따른 기업 소득세에 따른 이익에 포함
  - 에스토니아 회사가 받은 자본 이득은 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배될 경우 과세 대상
- 그룹회사
  - 기업 그룹을 형성하는 회사들은 세금 목적을 위해서 개별 회사로 취급
  - 그룹회계 단위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이 없음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s)
  - 현재 에스토니아에는 과소자본규정이 없음

## 2 이전가격세제

### □ 이전가격세제 근거 규정

- '00.1.1 이전가격 과세지침 제정
- '07년 이전가격보고서 규정
- '01년 특수관계자 규정 적용
- OECD가이드라인을 따름

최근 이전가격세제 조사

- 최근 에스토니아 과세당국은 이전가격논점에 대한 조사를 늘리고 있음
- 그룹간 용역거래에 중점을 두어 진행
- 결손금을 신고하는 법인은 더욱 심층분석
- 단, 지금까지의 이전가격이슈는 개인에 대한 조사위주

특수관계규정

- 지분, 의결권 10%이상을 보유하고 경영을 지배
  - 경제적 이해관계와 타법인의 영업에 영향력을 주는 법인

APA

- APA제도 없음

문서제출

- 과세당국의 요청 후 60일 안에 제출(자국어 가능, 요청시 에스토니아어)

**3**

**원천징수**

과세대상 & 세율

- 에스토니아에서 제공한 기술서비스료 : 10%
  - 국외수행 용역은 0%
- 에스토니아에서 제공한 경영서비스료 : 10%
  - 국외수행 용역은 0%
  - 이사, 감사로 수행한 용역은 21%
    - (’15년 1월 1일부터는 20%)

- 로열티 : 0%, 10%
  - 0% 로열티가 유럽 연합에서 정한 관련 기업 간의 시장 가격으로 지불된 경우
- 이자 : 0%, 21%

◆ 진출시 유의사항 ◆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음  
 단, 시장가격을 확연히 초과하는 이자부분 21% 원천징수  
 ☞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한 혜택부인

- 임대료 : 21 퍼센트
- 배당
  - 원천징수세 없음

**4 부가가치세**

근거법령

- VAT 체계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

과세대상

- 에스토니아에서 행해진 제품 공급 및 서비스 제공 과세 표준은 또한
- 무보수로 실시된 특정 행위(사업상의 선물의 수여 및 사업 자산의 사적인 사용)
- 부가 가치세 감면을 제외한 에스토니아에서 생성된 공급
- 조세 면제 상품을 제외한 수입 상품



- 에스토니아 외부 공급 장소에서 제공된 서비스
- 과세 대상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과세 가액에 부가 가치를 추가한 경우, 부동산 및 그 일부, 관련 임대 및 전세, 금융 서비스 및 증권
- 과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커뮤니티 내부의 상품 인수

## □ 납세의무자

- 에스토니아 기업(외국인의 국내 사업장 포함)이 에스토니아에서 VAT 신고 분기점(VAT registration threshold)(16000 유로) 이상의 과세 대상 공급을 행했다면, 에스토니아 VAT를 신고
- 연간 매출액이 16000 유로 미만인 세금 납부자들은 VAT 납부 의무 없음

### ◆ 진출시 유의사항 ◆

기업의 연매출이 16,000유로에 도달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의무는 자율임 (신고 선택)

- 에스토니아에 국내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고 다른 국가에서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무역업자가 과세 대상인 공급을 행할 경우, 위 외국인 무역업자는 과세 대상 공급이 행해진 날로부터 계산하여 VAT를 신고
- 원격판매 규정
  - 사업체가 에스토니아에서 VAT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았지만 기타 EU 회원국가로부터 VAT 신고 되지 않은 에스토니아의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배송할 경우 (“원격 판매”)
  - 판매 금액이 35000 유로의 분기점을 초과할 경우, VAT를 신고

## □ VAT 세율

- 표준 VAT 세율 : 20%
- 저율 VAT 세율 : 9%

- 서적 및 대부분의 정기간행물
- 의약품
- 장애인의 개인적 용도를 위한 의료 기기
- 숙박 서비스

○ 영세율(0%)

- 국제 운송 서비스
- 수출품
- 국제 항로에서 운영되는 비행기의 공급
- 외해의 항해용 원양항로 선박의 공급
- 자유 구역에서 시행된 공급
- 세관 창고에서 변경이 가해진 물품

에스토니아 기업이 기타 EU 회원국의 VAT 신고된 고객 또는 EU 외부의 고객(사업체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서비스가 다음 중 하나의 영역에 해당한다면, 0% 세율적용

- 지적 재산의 사용 또는 지적 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이전의 허용
- 서비스의 광고
- 컨설팅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법률 서비스, 회계 서비스, 감사 서비스, 및 번역 서비스, 및 데이터 처리 및 정보 공급
- 재보험을 포함 및 금고의 임차를 제외한 은행, 금융 및 보험거래
- 직원 지원
- 모든 형태의 운송 수단을 제외한 이동성 유형 재산의 임대차
- 통신 서비스 및 라디오와 TV 방송 서비스
- 전자 방식으로 공급되는 서비스
- 중개 서비스

○ 면세

- 부동산 및 그 일부(세무 당국이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부동산의 판매에 대한 과세는 선택적임)
- 부동산 및 그 일부에 대한 용익권의 대여, 임대, 또는 설정
- 보험 및 금융서비스(금융 서비스 과세 여부는 선택적임)

- 증권
  - 도박, 게임, 및 복권
  - 교육
  - 건강 및 복지서비스
  - 우편 서비스 및 우표
  - 투자용 금
- 공제 제한 : VAT를 공제할 수 없는 특정 항목 있음
- 비사업적 활동(사적 활동 포함): VAT가 사업 및 비사업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 지정이 요구됨
  - 사업상 접대 및 직원 또는 고객에 대한 식사 또는 숙박의 제공과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의 지급(출장 중의 숙박은 가능)
  - “관광업체의 마진 과세제도(Tour Operators’ Margin Schemes)” 범주에 해당되는 구매로 이 제도에 해당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VAT
  - 물품 판매마진에 대해 해명 대상인 VAT를 제공하는 모든 기타 유사한 과세 제도에 따라 판매되는 물품
- 수신자 부담방식(변칙)
- 과세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과세대상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획득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경우 수신인 부담 방식(reverse charge)이 적용
  - 외국 무역업자가 에스토니아 과세 대상 개인에게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에스토니아 개인이 획득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수신인 부담 방식을 적용한다면 에스토니아에서 VAT 신고는 생략가능

## 5

## 기타 주요조세

### □ 소비세(물품세)

- 과세대상
  - 술, 담배, 연료, 전기, 포장, 천연가스, 오일셰일 등
- 소비세는 에스토니아에서 생산되거나 에스토니아로 수입된 담배 제품 (흡연 담배, 쉐련, 시가, 소형 시가, 씹는담배)에 부과
  - 납세 인지가 없는 담배 제품의 유통은 금지
- 에스토니아에서 생산되거나 에스토니아로 수입된 와인, 맥주, 발효 음료, 중간 제품 및 기타 알코올에 부과
  - 에탄올 함량이 22퍼센트 이상이고 포장 용기가 0.05 리터 이상인 알코올 음료는 수입 인지가 있어야 함
- 포장 소비세는 에스토니아에서 포장되고 기타 회원국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에스토니아로 수입된 포장에 부과
  - 포장의 재생 이용률을 충족하지 않는 소비세의 납부자들은 미사용분 포장의 양에 대한 소비세를 납부
- 전기에 대한 소비세 납부 의무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적용
- 세율예시

- \* 맥주 : 에탄올 1%당 5.41 EUR  
(소규모 생산업자의 경우 50% 감면)
- \* 6%까지(6% 포함) 에탄올 내용물을 포함한 발효 음료나 와인 : 헥토리터 당 31.70 EUR
- \* 담배  
천 개 당 고정 요율, 그리고 담배의 최대 소매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된 비례 요율로 구성  
(고정 요율은 38.35 EUR, 비례 요율은 최대 소매가격의 31%)
- \* 무연 휘발유의 경우 천 리터당 422.77 EUR
- \* 유연 휘발유의 경우 천 리터당 422.77 EUR





- \* 항공 연료의 경우 천 리터당 71.58 EUR
- \* 경유의 경우 천 리터당 392.92 EUR
- \* 증유의 경우 천 리터당 15.01 EUR

'05년 7월 27일부터 바이오 연료에 대하여 소비세를 면제  
- 6년간 적용(2011년 7월 27일까지)

## 부동산세

### ○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금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법적 지배권을 가진 개인 및 법인

### ○ 일반 세율 : 지적측량 가치의 1.5%

- 전년도 가액의 최대 25% 이상 증가제한

### ○ 영업활동에 공하지 않는 개인 주택 세율

- LVL 40,000을 초과하지 않는 지적측량 가치로부터 0.2%
- LVL 40,000에서 LVL 75,000의 지적측량 가치로부터 0.4%
- LVL 75,000을 초과하는 지적측량 가치로부터 0.6%

## 토지세

### ○ 과세대상 : 개인 토지의 소유자들에 의해 납부

### ○ 세율 : 0.1~2.5%

- 납부기한 : 상반기 중에 취득되었으면 토지세는 초년부터 발생  
하반기 중에 취득된 경우, 토지세 이듬해에 발생

## 소방귀세 : 축산업계에 부과(온실가스 절감)

## 복권세, 도박세

- 도박 기계 1대당 447 EUR

- 도박 테이블 1개당 1278 EUR
- 베팅 : (해당 금액의) 5%
- 토탈리제이터 : (해당 금액의) 5%
- 기술 게임 : (해당 금액의) 18%
- 도박 테이블이나 도박 기계에 조직되지 않은 운으로 하는 게임: 18%
- 일반 복권 : (티켓 당) 18%
- 숫자 복권 : (티켓 당) 10%

## □ 사회부담금

- 에스토니아 법령은 사회(보장) 세금을 연금 보험 및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에 부과된 금융 채무로 정의
- 부과대상
  - 금전으로 고용자에게 지급된 급여 및 기타 보수
  - 공무원에게 지급된 급여 및 기타 보수
  - 법인의 경영이나 관리 단체 구성원들에게 지급된 보수
  -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최소 월정 금액에 대해 매년 사회 세금을 납부)
  - 기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체결된 의무 법률에 따른 계약뿐만 아니라 서비스 계약, 위임 계약에 기초하여 자연인들에게 지급된 보수
  - 부가 혜택
  - 에스토니아의 실업 보수 체제에 의거하여 지급된 혜택
  - 기타 에스토니아 법령에 따라 지급된 모든 근로 보수
- 요율 : 과세 금액의 33%(일부 저소득층 12%)

## 6 개인소득세

### □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 에스토니아에 거주할 고정지를 가진 개인
- 12개월의 기간 동안 183일 넘게 에스토니아에 거주할 때
- 에스토니아 정부에 의해 해외에서 고용된 에스토니아 시민일 경우

### □ 납세의무자 : 거주 및 비거주 개인

### □ 과세대상 및 세율

- 21%(표준세율)
  - 고용 (금전 지급)
  - 사업 (자영업 소득)
  - 재산/투자(렌탈 소득, 예금 및 대부 이자, 로얄티, 사업처분에 대한 자본 이득, 유동 및 부동산 재산)
  - 기타 원천(위자료 및 소정 연금, 장학금, 교부금, 상금, 복권 당첨금, 보험 배상금 및 연금 펀드 지급금)
- 10%
  - 에스토니아 안에서 수행된 활동에 대한 로얄티
  - 예술가 및 스포츠인에 대한 지불비용
  - 비거주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에스토니아 안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 대해 거주 법인에 의해 원천징수
  - 보험계약자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제공하는 연금 보험의 계약 하에서 지급된 액수뿐 아니라 신탁 투자자에 대한 연금 펀드로부터의 지급
    - 보험계약자나 신탁 투자자가 55세가 되었고 계약 또는 초기 단위금 취득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보험계약자나 신탁 투자자가 영구히 전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연금 펀드의 환급 후, 또는 보험계약자나 신탁 투자자의 사망에 따라, 그 후계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 □ 비과세소득

- 에스토니아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소득세가 수익의 몫에 대해 납부되었거나 소득세가 외국 국가에서의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 되었을 경우의 배당금
- 양도 전에 실질적 부분이 납세자에 의해 자신의 고정 혹은 기본 거주 장소로 사용된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산 판매로부터의 자본 이득  
(이 공제항목은 2년 동안 부동산 자산의 일회 판매에 대해서만 적용)
- 개인 용도의 유동 자산 판매로부터 나온 이득
- 소정 자녀 용돈 및 기타 사회 보장 지원금
- 한 해에 2,304 유로까지의 국민연금
- 사업자나 고용주와 관련하여 지불된 것이 아닌 소정 장학금 및 교부금
- 정부에 의해 설정된 조건 및 규정에 부합하는 국제 및 국내 문화 및 과학 상금과 스포츠 상금
- 복지 수당(고용주에 의해 세금 납부가능)
- 상속 수취(향후 판매가 아닌, 상속 대상자가 세금 공제된 경우에 한함)
- 자연인, 주나 지방 정부 당국, 거주 법인이나 비거주인으로부터 에스토니아에 등록된 제도를 통하여 받은 선물 및 기부금
- 한 해 768 유로까지 업무 사고에 대해 피고용자에게 지불된 보상금
- 보험 계약으로부터 받은 수익
- 보험계약자가 55세에 도달하였거나, 지불이 최소 3개월마다 동일하거나 점차 증가되는 액수의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 그의 총체적이고 영구적인 업무 무능력이 증명된 후, 보험계약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연금
- 사업상 출장 경부 및 특정한 제한을 가진 매일의 용돈에 대한 보상금



- 소정 규정에 따른 개인 차량의 사업상 사용에 대한 보상금
- 운용 허가를 기반으로 편제된 복권 당첨금
- 재산 재편성 중에 복귀된 토지의 최초 판매로부터 나온 소득
- EEA 거주 신용 기관에 의해 지불된 이자
- 대부분의 비과세는 비거주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음  
(다른 EU 또는 EEA 국가의 거주자가 에스토니아 안에서 자신의 연소득의 75% 이상을 받을 경우 비과세 적용가능)

#### □ 인적공제

- 인당 EUR 1,728
- 17세미만 자녀인 경우 두번째 자녀부터 추가공제 EUR 1,728

#### □ 기타공제

- 거주 자연인(어떤 경우 비거주자 포함)에 대한 위자료 지불
- EU 소속 국가 거주 은행에 납부된 주택 대출 및 자본 임차에 대한 이자
- 훈련비용(정부가 정한 조건 및 제한의 대상이 됨)
- 소정 상한치(납세 기간 소득의 총 5% 이하)까지의 특정인에 대한 선물 및 기부금과 교역단체 입회비 및 멤버십 비용
- 소득세 감면을 이용한 소정 연금 펀드에 대한 기여금(납세 기간 소득의 15%까지)
- 공제 총액은 연간 납세자 당 3,196유로, 납세자의 납세 가능 소득의 50%가 넘게 초과될 수 없음

#### □ 공제

- 의무적 사회 보장 부과금
- 직계 존속이나 비속에 대한 지원금
- 자선 기관에 대한 기부금

-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에 관한 비용
- 개인연금 납부금
- 과세기간 중 6개월 미만을 거주한 비거주자는 사회 보장 부담금과 같은 표준 공제가능

#### □ 외국납부세액 공제

-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한 환급 방법이 적용
- 외국 세금이 에스토니아 내 과세소득에 포함된 경우
- 공제한도 : 에스토니아 세금한도
- 세금이 납부되었다는 증명서가 필요

#### □ 세금 징수

- 납세 기간은 역년
- 소득세 신고는 이듬해 3월 31일까지 납세 당국에 제출
  - 소득세 환급은 자산 별로 작성되고, 최대 3년 동안 납세 당국에 의해 조사가능(특정 경우 6년까지 가능)
- 기혼 부부는 공동으로 신고가능

#### □ 사회 보장 및 건강 보험 부과금

- 사회보장세는 고용주들에 의해 납부
  - 33% 세율의 사회적 세금은 피고용자들에 대한 임금 및 기타 금전적 보상에 대해 납부(월별)
  - 4분기 당 적어도 275유로(2011년 중예)의 선납
  - 자영업자들의 최대 사회적 납세의 의무는 최소 임금의 1.5배로부터 산출된 금액으로 한정



## ☐ 고용보험

- 고용 보험 비용은 고용주와 피고용자들 사이에 분담
  - 고용주는 총 급여의 1.4%, 피고용자 2.8%(급여지급시 월천징수)

## ☐ 자본세

- 에스토니아에는 순수 복지/자본 세금이 존재하지 않음

## ☐ 상속증여세

- 에스토니아에는 상속이나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음
  - 개인이 상속 자산을 팔아서 그러한 유형의 자산 판매로부터 이득이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총 판매금액이 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 세금계산 예시

1. 월간 총 급여(유로)	1,000
2. 월별 비납세최소액	144
3. 고용보험(1의 1.4%)	28
4. 연금보험(1의 2%)	20
5. 월별 과세소득	808
6. 개인소득세	170
월별 순소득	782
월별순소득 : 총급여 - 사회부담금 - 개인소득세	

## 제 3 장

# 에스토니아 투자환경

1. WHY ESTONIA?
2. 에스토니아 투자방법(설립)
3. 지사 및 연락사무소
4. 합병 및 분할(국제합병)



# 1 WHY ESTONIA?

## □ 유럽에서 가장 사업환경이 좋은 나라

○ 에스토니아는 다수의 공인기관의 평가에서 유럽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손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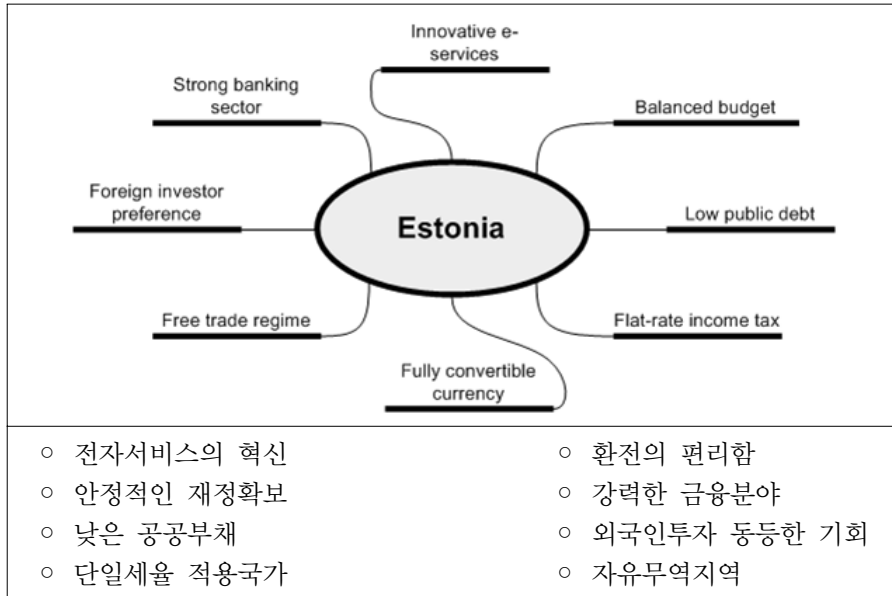
분야	기관
국가경쟁력 33위 / 주요 100개국 중	세계경제포럼('10, '11)
사업하기 좋은 나라 17위 / 175개국 중	'11년 세계은행
세계에서 사업하기 가장 자유로운 나라 14위	월스트리트저널(11)'
유로존 위기속에 에스토니아 '스타트업 국가'가 된 이유는?	'12.6.17 전자신문 기사
에스토니아, 유로존 격랑서 나홀로 '순풍의 돛'	'11.10.13 한겨레 기사

【출처 : 에스토니아 투자개발청】

## □ 적극적 투자유치

- 에스토니아 정부는 재원의 출처에 관계하지 않고 투자를 환영
  - 국내외 재원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에스토니아 상업등록소(Commercial Register)에 등록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유일한 제한이라면 농업용지 구매에 대한 제한으로 농업용지를 구매한 투자가는 농업용도로만 토지를 사용
- 에스토니아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와 지원책은 이론적으로 소유주와 관계 없이 에스토니아에 등록된 모든 기업들에게 개방  
(단, 서식이 주로 에스토니아어로 이루어져 전문가 도움 필요)

○ 에스토니아 투자환경 8요소



【출처 : 에스토니아 투자개발청】

□ 인프라구축 지원

- 탈린 이외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으로서 기업설립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투자(농업이나 도소매업, 어업, 운송 서비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최소 지원금은 EEK 10만(6,391 유로)이며, 상한선은 없음
  - 민간기업들은 규모에 따라 소요비용의 50-65%까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Enterprise Estonia에 제출

□ 고용유지지원

- 생활수준이 낮고 실업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투자 프로젝트 지원책 (Talin, Tartu, Parnu 지역은 제외)

## □ 연구개발 지원

- 민간기업의 제품개발과 기타 기술 지향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 증여와 연금융(soft loan) 지원이 가능  
(에스토니아 투자청(EIA)와 에스토니아 기술청(ESTAG))
  - 제품개발(Product Development) : 신제품의 개발이나 현재의 제품 또는 기술,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 산업연구(Industrial Research) :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현재의 제품 또는 기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신지식 획득에 목적을 둔 연구활동 계획
  - 상업화(feasibility) 검토 :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 개발 준비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연구개발 단계	활동 내역	증 여	연 금 융
계획 단계	상업화 검토	최대 EEK 10만, 소요경비의 75%까지 가능. 상업화 검토를 위한 총비용은 이후 단계 비용의 25%까지	없음
시행 단계	산업연구	총비용의 50%까지	총비용의 75%까지 연리 1-5%로 최대 8년까지 융자.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담보 불요
	제품개발	총비용의 25%까지	총비용의 75%까지 연리 1-5%로 최대 8년까지 융자.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담보 불요

## □ 사업자문정책

- 사업자문 정책은 종업원 250명 이하의 제조업, 종업원 50명 이하의 무역 및 서비스업 기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협력 파트너 물색이나 시장 조사에 있어서 에스토니아 기업청에 등록된 컨설팅 기업체로부터 비즈니스 자문 서비스를 받을 때 자금지원

□ 창업지원

- 탈린 이외 지역에서 종업원 50명 이하의 기업체가 새로이 창업을 한다거나 최소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다가 활동을 재개하려는 업체에게 지원

□ 경제특구 : 국경지역의 4개의 경제특구가 있음

**2** 에스토니아 투자방법(설립)

□ 투자유형

- '11년 경제 자유도 지표에서 상위 15위 안에 랭크되었으며, 유럽 지역에서 상위 5위 안에 랭크
- '11년 1월 1일, '92년부터 에스토니아의 화폐였던 크론이 유로로 교체(화폐 변화는 주식 및 증권액면가를 유로로 변경할 의무 등을 포함)
  - 주식 및 증권 액면가를 유로로 표시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규정을 보완하고, 자본 증가 또는 감소 결정을 내리고, 필요할 경우 각각의 보정을 에스토니아 중앙예탁기관(CSD)에 등록('12년 1월 까지 완료)
- 에스토니아 내에서의 투자는 부동산 및 기타 재산 권리, 기업의 주식, 용자, 권리, 지적 재산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가 가능
- 대부분의 외국 직접 투자는 부동산의 취득, 에스토니아 내 기업 설립, 기존 기업의 기업의 주주권 획득, 기업과의 합동 벤처 또는 합병

□ 법인 기업체

- 에스토니아 내에서의 기업 활동은 EU 제정법에 근거하여 1995년 9월 1일에 시행된 상법(Commercial Code)에 준거

-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상공협회 및 개인기업 등 설립가능
- 비공개유한회사, 공개유한회사
  - 에스토니아의 주요 투자 형태
  - 일반적으로, 중간 규모의 기업은 비공개 유한회사의 형태를 통해 기업 활동을 하는 편이 용이함
  - 거래소에 상장주를 발행하기를 원하는 상당수의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경우 공개 기업을 구성
- 외국기업이 현지 지사를 통해 사업가능, 유럽기업도 등록가능

## □ 법인설립

- 유한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
- 정관작성 및 승인
  -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설립자들은 정관을 작성
  - 설립자들은 또한 상기 정관에 상기 회사의 정관이 부속됨을 승인
  - 설립자가 한 명일 경우, 상기 정관은 기초 결의안으로 대체
- 공증
  - 유한회사들의 정관 또는 기초 결의안 및 부속으로 승인될 정관들 등 상업등기국에 제출될 서류의 숫자는 에스토니아 내의 공증인에 의해 공증
  - 상업등기국에 등록된 기업의 현존 데이터를 정정하기 위한 신청서의 경우 공증인에 의한 완전한 공증은 불필요
- 인터넷을 통한 비공개유한회사설립(일부국가만 가능)
  - '07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상업등기국에 상기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공증인 없이 인터넷을 통해 비공개 유한회사를 설립가능.

(국제 국적 증명 식별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기업의 법적 대표자가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핀란드, 또는 벨기에 국적을 가졌을 경우에만 제공)

- 설립자들은 상업등기국에 대한 상기 기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분에 대한 지불을 끝마쳐야 함

## □ 주식

- 공개 유한회사의 주식들은 에스토니아 중앙 실물증권등록부에 등록
  - 비공개 유한회사의 경우 등록은 선택사항
  - 중앙 실물증권등록부는 에스토니아 중앙예탁기관에 의해 관리
- 주식양도
  - 공개 유한회사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계약 양식에 요구되는 사항은 없음
  - 에스토니아 중앙 실물증권등록부 내의 변경을 위한 절차들은 해당 계좌 소유주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유가증권 계좌 매니저로 기능하는 은행들에 의해 처리
  - 비공개 유한회사의 주식 양도 계약은 에스토니아 공증인에 의해 공증 (에스토니아 중앙 실물증권등록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설립일
  - 상업등기국에 등록된 이후에 설립

## □ 법인자본

- 유형별 자본

구분	최소자본
비공개 유한회사	2,500유로
공개 유한회사	25,000유로

- 액면가

구분	최소자본
비공개 유한회사	1유로
공개 유한회사	0.1유로

- 비공개 유한회사의 각 주주는 하나의 주식을 가질 수 있으며, 후자의 금액은 상기 비공개 유한회사에서의 주식 보유량과 같아짐
- 유한회사의 총 자산이 주식 자본의 1/2 미만일 경우 또는 법에 규제된 주식 자본의 최소 액수 미만일 경우, 주주들은 이하의 여부에 대한 결정
  - 총 자산이 최소한 상기 액수를 형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주식자본의 감소 또는 증가
  - 결과적으로 상기 유한회사의 총 자산이 법에 규제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게 되는 다른 수단의 사용
  - 상기 유한회사의 해체, 합병, 분할 또는 업종변경(transformation)
  - 파산 신청 제출

## □ 경영

- 3단계 경영조직
  - 근본적인 기업 정책(정관 변경, 주식 자산 변경, 배당 분배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 법인으로서의 주주총회
  - 기업의 전략적 기업 결정 및 기업 경영 감독 책임을 갖는 감사회
  - 기업의 일일 경영 및 회계에 대한 책임을 갖는 이사회
- 비공개 유한회사 : 3단계 경영조직 생략가능
  - 비공개 유한회사의 주식 자본이 25,000 유로를 초과하고 이사회 임원이 3명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면 주주들과 기업의 경영진만으로 구성
- 감사회는 최소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인원의 상한에는 제한이 없음

### 3 지사 및 연락사무소

#### □ 외국 기업 지사

- 상업등기국 지사등록
  - 외국 기업이 에스토니아 내에서 항구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경우, 해당 기업은 상업등기국에 지사를 등록할 수 있음
  - 지사는 법인이 아님
  - 해당 기업은 상기 지사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을 짐
  - 법에 규제된 경우, 금융 은행 등의 기업은 에스토니아 내에 지사를 설립 하기 위한 허가를 취득
- 임원의 지정
  - 한 명 이상의 임원을 지정
  - 임원은 유효한 법적 권리보유능력을 갖는 자연인
  - 임원은 해당 지사를 지휘하고 대표하며 해당 지사의 회계를 정리

◆ 진출시 유의사항 ◆

지사 임원의 지정  
 최소한 한 명의 임원은 에스토니아, 기타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 또는 스위스에 거주해야 함  
 상기 지사에 관해 별도의 계좌를 유지(회계법)

- 연간 감사보고서발행
  -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할 경우, 임원은 해당 기업의 회계 감사 및 승인된 연간 보고서를 늦어도 해당 연간 보고서의 승인으로부터 한 달 이내 및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7개월 이내에 제출
  - 해당 지사의 설립자가 계열사일 경우, 상기 설립자는, 모기업의 이사회 (directing body)가 서명한, 상기 자회사는 연간 보고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서한을 함께 제출하고, 해당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이익이 모기



업의 통합 계좌에 반영되었을 경우, 연간 보고서를 대신하여 모기업의 통합 계좌 내역을 제출

- 국제적 서비스 제공
  - 국제적으로 서비스제공 가능  
(예 : 에스토니아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또는 그 지사가 에스토니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 에스토니아 법은 금융, 보험, 펀드 관리, 투자, 및 전자 통화금융기관의 국제적 서비스 제공을 규제

#### □ 연락(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에스토니아 기업 법률은 대표 사무소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음  
외국 회사는 그를 대표하는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이는 그러한 특정 지위를 가진 법인체가 될 수 없음

## 4 합병 및 분할 (국제합병)

#### □ 합병(Mergers)

- 합병은 상법에 의해 규제
- 합병 종류
  - 기업(획득되는 기업)은 다른 기업(획득하는 기업)과 합병  
(획득되는 기업은 상업등기국에 합병 등록 이후 해산간주)
  - 신규 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의해 합병  
(합병되는 기업 양쪽 모두 상업등기국에 합병 등록 이후 해산간주)
- 합병효과

- 획득되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획득하는 기업에 양도
- 획득되는 기업의 주주들은 합병 계약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획득하는 기업의 주주가 됨

## □ 국제합병(Cross-border mergers)

- 국제 합병 지침(2005/56/EU)는 에스토니아 제정법에 의해 시행
  - 상법에 명시된 국제 합병 규정은 국내 합병과 유사하나 세부 사항에서 좀 더 제약이 많음
- 자산 및 부채(기업)의 양도는 책임법(Law of Obligations Act)에 의해 규제
  - 자산 및 부채의 구성에 따라 거래 서류에 적용되는 형식상 절차다름
- 자산과 부채를 인수함으로써, 양수인은 상기 기업과 관련된 양도인의 모든 책임(고용 계약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포함)을 인수
-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기 거래 이전에 발생하고 거래 시점에서 만기되거나 양도 이후 5년 이내에 만기될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짐
  - 공동 책임 원칙을 무시한 계약은 제 3자가 사전 서면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없음

## 5 주식공개 및 기타

### □ 주식공개

- 발트 해운거래소가 공통 목록(common list)상의 모든 발트해 기업들의 공통 프레젠테이션(common presentation)을 가지고 있지만, 상기 기업들은 여전히 모국 시장 (예: 빌니우스, 리가, 또는 탈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현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음

- 에스토니아 기업이 상기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공개 유한 회사(AS) 양식이 필요
- 주요 상장절차
  - 주주들의 주식 상장 결정 발급 인증을 해줄 계획서 준비
  - 등록은 탈린 에스토니아 중앙 실물증권등록부와의 협의
- 주식회사(JSC)만 가능
- 리가 증권거래소에 신청양식을 접수(라트비아 중앙은행동의)
- 금융 상품들의 계획서는 승인 및 공개
- 주식 거래소 규정은 EU 규정의 조항에 기초

#### □ 파산소송(지급불능 소송)

- 파산 신청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의해 법정에 제출
- 법인이 명백하게 항구적인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이사회 임원들은 파산 신청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채권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가 채무자의 재정 상황 때문에 일시적이지 않을 경우 지급불능으로 간주
  - 채무자의 자산들이 채무자의 책임에 비해 불충분하고 그러한 불충분함이 채무자의 재정 상황 때문에 일시적이지 않을 경우에도 지급불능으로 간주
- 법원 파산수속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임시 파산관재인을 지정)
  - 임시 파산관재인은 상기 파산 신청의 공판을 위한 소송 준비를 위해 법에 명시되거나 법정에서 지정한 임무를 수행
  - 공판에서, 법정은 채무자에게 파산을 선언할지, 신청을 반려할지, 또는 감액(abatement)을 통해 상기 파산수속이 종료될 결정을 내려야 함
- 파산 선언의 결과는 채무자의 자산의 파산재단에의 이전, 파산 관리인에의 상기 채무자 자산 이전 권리 부여, 및 상기 채무자의 여하한 거래에의 참가 권리 박탈을 포함

## □ 채권자와의 합의

- 파산법은 권리의 통지, 증명, 및 방어에 대해 엄격한 규정과 시간계획표를 명시
  - 상기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권리의 불인정, 불리한 순위 책정, 또는 소멸을 초래
- 채권자의 권리 만족 이전에, 자산 제외 또는 회복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권리들, 통합 책임, 및 파산수속 비용 등의, 파산 소송수속에 관련된 지불이 이루어져야 함
- 채권자들의 권리는 다음의 순위 배분
  - 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담보금에 의해 보증된 인정된 권리들
  -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간 동안 청구된 기타 인정된 권리들
  -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간 동안 청구되지는 않았으나 인정된 권리들

## □ 회생 및 절충

- 현행 파산법은 회생 및 절충을 인정
- 기업의 회생은 채무자의 기업 활동의 계속을 통한 채권자들의 권리 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들에 대한 신청서로 이루어짐
- 회생 계획이 채권자 총회에서 승인될 경우, 신탁 관리자는 즉각 회생을 실행
- 절충은 채무의 지불에 대한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합의로, 채무의 감액이나 또는 지불 기간의 연장을 포함
- 절충 결정은 채권자 총회에서 이루어지 절충 승인은 법정에서 결정
- '08년 12월에 재판성법이 발효되면서 회생 절차는 에스토니아 상법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절차

## □ 재판성

- '08년 12월, 재판성법이 에스토니아 법률에 도입

- 재편성 법은 기업의 재편성 과정에서 이익을 고려하고 사업권리, 채권자, 및 제 3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편성 수속을 규제
  - 기업의 재편성은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 유동성 회복, 수익성 개선, 및 지속 가능한 경영 보장을 위한 조치들의 신청을 의미  
(재편성은 오직 법상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
- 재편성은 모든 당사자들(소유주들, 채권자들, 종업원들)에게 파산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재편성은 법정의 도움 없이 채권자들과의 합의에 도달가능
  - 성공적인 재편성은 파산의 대안이며 지불 능력으로의 길을 제공
- 금융기관, 전자 통화금융기관, 보험사, 투자회사, 관리 회사, 공개 유한회사로서 설립된 투자 펀드, 에스토니아 중앙 실물증권등록부의 등록 담당자, 증권결제시스템 업자, 및 지불 시스템의 관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참 고 문 헌(1)

1. Alvin Rabushka, 『Flat tax』, Essays, 2012
2. Deloitte, 『Latvia Highlight 2012』, Deloitte, 2012
3. Deloitte, 『Lithuania Highlight 2012』, Deloitte, 2012
4. Deloitte, 『Tax and investment in Latvia』, Deloitte, 2011
5. Dovile Alekniene, 『Expatriate Tax Planning 2010 in baltics』, Gencs Valters, 2010
6. Gencs Valters, 『Corporate Tax issues in the baltics』, Gencs Valters, 2012
7. Gencs Valters, 『Doing business guide in estonia』, Gencs Valters, 2009
8. Gencs Valters, 『Doing business guide in latvia』, Gencs Valters, 2009
9. Gencs Valters, 『Doing business guide in lithuania』, Gencs Valters, 2009
10. KPMG baltics, 『Investment in the baltic states』, KPMG baltics, 2011
11. KPMG baltics, 『TaxCard 2012 Estonia』, KPMG baltics, 2012
12. KPMG baltics, 『TaxCard 2012 Estonia』, KPMG baltics, 2012
13. KPMG baltics, 『TaxCard 2012 Lithuania』, KPMG baltics, 2012
14. KPMG, 『Global Transfer Pricing Review』, KPMG, 2012
15. Lawin, 『Do you believe in baltic recovery』, Lawin, 2011
16. Lawin, 『Doing business in the baltics 2010』, Lawin, 2010
17. LIAA, 『Latvia-Korea Economic cooperarion and future perspectives』, LIAA, 2011
18. PWC, 『Doing business and investing in Estonia 2011』, PWC, 2011

## 참 고 문 헌(2)

19. PWC, 『Tax Facts & Figures 2010 Lithuania』, PWC, 2010
20. Sorainen, 『2007 Baltic states Tax Summary』, Sorainen, 2007
21. Talis J. Puthins, 『Baltic Shadow Economies』, Biceps, 2011
22. Tauno Tiusanen, 『The baltic states- successful transition in estonia, latvia, lithuania』, NDRC, 2004
23. <http://www.balticbuyingguide.com/content/baltics-cost-living-baltic-states>
24. <http://www.chamber.lv/pub/index.php?lang=eng>(Latv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LCCI))
25. <http://www.eas.ee/?lang=eng>(Estonian Trade Promotion Agency)
26. [http://www.economist.com/blogs/theworldin2011/2010/12/baltic\\_states\\_will\\_show\\_their\\_differences\\_2011](http://www.economist.com/blogs/theworldin2011/2010/12/baltic_states_will_show_their_differences_2011)
27. <http://www.etc.ee/index.php?page=3>(Estonian Trade Council)
28. <http://www.investinbaltics.com/taxation/>
29. <http://www.investinestonia.com>(Estonian Investment Agency)
30. <http://www.lda.lt/en/index.html>(Lithuanian Development Agency)
31. [www.liaa.gov.lv/](http://www.liaa.gov.lv/)(Investment and Development Agency of Latvia)
32. 박동운(단국대학교수), 『부자에게 세금 더 매긴다고 가난한 사람이 잘사는 것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 2012
35. 현진권(아주대학교수), 『법인세제를 단일세율로 바꾸자』, 자유기업원, 2010

본 안내서는 우리기업이 발트3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발트 3국 세법 등을 2012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개별 국가의 세법 및 조세 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08

팩스번호 : 02-723-9976

### 원고작성 및 편집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국제조사관 우 병 철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국제조사관 신 민 호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국제조사관 조 영 규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 담당관실(☎397-140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